

“

오늘도 7명이
퇴근하지 못했다

”

- 유가족이 말하는 산재사망 사고와 기업처벌 -

- 일시 : 2020년 5월 23일(토) 10시
- 장소 : 민주노총 13층 대회의실
- 주최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준)
산업재해피해가족네트워크 '다시는'
구의역참사 4주기 추모위원회

오늘도 7명이 퇴근하지 못했다

-유가족이 말하는 산재사망 사고와
기업처벌-

- ▶ 일시: 2020년 5월 23일(토) 오전 10시
- ▶ 장소: 민주노총 13층 대회의실
- ▶ 주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 운동본부(준), 산업재해피해가족네트워킹 '다시는', 구의역참사 4주기 추모위원회

프 로 그 램 순 서

1부 유가족이 말하는 기업처벌

사회

김혜진 (생명안전 시민넷 공동대표)

발언

강석경: CJ 진천 고교 현장실습생 고 김동준 어머니

김도현: 청년건설노동자 고 김태규 누나

이용관: tvn 고 이한빛 PD 아버지

김미숙: 태안화력 비정규직청년노동자 고 김용균 어머니

임선제: 구의역 김군의 동료, PSD 지회장

2부 늦어도 너무 늦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사회

김혜진 (생명안전 시민넷 공동대표)

발제

- 삼성중공업 판결을 통해 본 기업처벌의 한계와 기업처벌법의 필요성
: 김동현 변호사(삼성중공업 크레인사고 피해노동자 지원단, 희망을만드는법)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소개 및 주요 판례로 본 기업처벌법의 의의
: 오민애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자 료 집 목 차

프로그램	순서
p.01	
자료집	목차
p.02	

1부 유가족이 말하는 기업처벌

힘들다고 말할 때 건디어 보자고 해서 미안해	p.05
--------------------------	------

- 강석경 / CJ 진천 고교 현장실습생 고 김동준 어머니

본인들 가족이 죽었어도 이렇게 면죄부를 주었을 겁니까?	16
--------------------------------	----

- 김도현 / 청년건설노동자 고 김태규 누나

이한빛PD 사망 이후 방송업계의 노동환경과 산업안전의 문제점	p.29
-----------------------------------	------

- 이용관 / tvn 고 이한빛 PD 아버지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게 함께 목소리를 내주십시오.	p.38
--------------------------------	------

- 김미숙 / 태안화력 비정규직청년노동자 고 김용균 어머니

구의역 참사 4주기, 다시는 제2의 김군이 없기를 바라며...	p.48
------------------------------------	------

- 임선제 / 구의역 김군의 동료, PSD 지회장

2부 늦어도 너무 늦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삼성중공업 판결을 통해 본 기업처벌의 한계와 기업처벌법의 필요성	p.53
-------------------------------------	------

- 김동현 변호사 / 삼성중공업 크레인사고 피해노동자 지원단, 희망을만드는법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소개 및 주요 판례로 본 기업처벌법의 의의	p.54
-----------------------------------	------

- 오민애 변호사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1부 유가족이 말하는 기업처벌

사회

김혜진 (생명안전 시민넷 공동대표)

발언

강석경: CJ 진천 고교 현장실습생 고 김동준 어머니

김도현: 청년건설노동자 고 김태규 누나

이용관: tvn 고 이한빛 PD 아버지

김미숙: 태안화력 비정규직청년노동자 고 김용균 어머니

임선제: 구의역 김군의 동료, PSD 지회장

힘들다고 말할 때 견디어 보자고 해서 미안해

강석경 / CJ 진천 고교 현장실습생 고 김동준 어머니

고등학교 현장실습 중 사망한 동준엄마 강석경입니다.

마이스터고 3학년 2학기 동준이는 씨제이 제일제당에 3개월 현장실습 중이었습니다.

씨제이 전체 오리엔테이션, 진천공장 연수를 차례로 마치고 현장에 배치된 순간부터 동준이의 일상은 지옥으로 변했습니다. 노동현장의 가장 밑바닥이었던 현장실습생 동준이에겐 같이 일하는 모든 동료는 선임이고 상사였습니다. 18살 생애 처음이었던 노동현장에서 동준이는 일이 서툰 수밖에 없었고, 선임들에게 계속 혼나는 상황을 힘겨워했습니다. 동준이가 힘들다고 말했을 때 저는 “처음에는 다 그래. 일에 적응하면 괜찮아질 거야. 조금만 참아보자.”라고 말했습니다. 2월에 졸업이라…….

씨제이 제일제당은 명절이 있는 달에 특히 일이 많습니다. 출근도 일찍 하고 잔업이 항상 있었고요, 계약서에는 ‘1시간에 한해서 협의 하에 연장 근로한다’라고 되어있었지만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하기 싫다고 빠지기도 어려운 구조에서 동준이는 장시간 일하는 것을 힘들어했습니다.

회식이 있던 날이었습니다. 선임들은 신입들을 식당 주차장에 모아놓고 기강을 잡는다고 얼차려를 주었습니다. 머리박기를 시키고 쓰러지면 발로 머리를 밟기까지 했습니다. “너희들이 일을 제대로 못해서 위로부터 한소리 들었다”며 집단 폭행까지 이어졌습니다.

동준이는 “내가 일하러 왔지 얻어맞으러 온 거 아니다. 때리지 말라”고 항의

를 했지만, 뺨까지 맞는 사태로 일은 더 커져 버렸고, “윗선과 학교 담임선생님에게 보고하겠다”라고 이야기했는데.....그 말이 폭행한 선임들의 심기를 건드렸는지, “밖에 알리면 너 죽여 버린다. 내 친구들 중에 주먹 쓰는 어깨들 조폭 형님들 많다”라고 협박이 돌아왔습니다.

그날 이후 근무 중이나 식사 시간, 출퇴근 중에도 협박이 계속됐습니다. “너 뿐 아니라 가족들도 못 살게 만들겠다. 가만히 있으라”는 협박이 있었다고, 동준이 트위터 친구들과의 대화에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날 아침.....

사고 후 회사는 동준이 개인의 잘못과 불우한 가정사에 의한 개인적인 죽음으로 몰아갔습니다. 폭행이 있었음을 이야기했지만, 동료들과의 개인적인 문제지 업무와는 무관한 것이라 주장하며 동료들 조문도 금지하고 사고에 대해 함구령까지 내렸습니다. 그 당시 저는 무얼 해야 할지 몰랐고 “산재를 신청할 테니 적극 협조해 달라”는 말만 하고 장례를 치렀습니다.

산재를 신청하고 회사에 자료를 요청했지만, 회사는 “당시 담당자가 전근 가서 알 수 없다”며 자료 제출을 거부했고, 동료들도 증언하지 않았습니다. 18살 현장실습생 학생이 폭행과 집단 괴롭힘 무서운 협박에 시달려 세상을 떠났는데, 같이 일했던 누구도 진실을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응답하지 않은 그들 모두 동준이를 죽게 만든 공범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동료의 죽음에 아무 말도 하지 못하게 하는 회사의 그 구조도 이런 사고가 계속되는 이유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게 폭행에 가담한 사람 3명중 1명만 벌금형에 처해졌고, 나머지 공범들과 회사는 기소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회사는 동준이의 죽음에 만 18살 현장실습생의 죽음에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았습니다.

회사는 부인했지만, 몇 달이 지나고 동준이와 함께 피해를 입었던 23살 형이 나중에 알려주었습니다. 폭행을 주도했던 선임 중 한 명이 동준이 사고에 대한 조치로 보직변경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이를 통해 사고와 회사가 무관하지 않음이 있음을 확인되었고. 현장실습생 중 최초로 산재를 인

정받게 되었습니다. 1년이 넘는 시간을 견디며, 동준이의 죽음이 동준이의 잘못이 아니라 회사의 잘못된 구조에 의한 사회적 타살이라는 것을 확인받았습니다.

“동준아 너의 나약함이 아니란다.

너의 잘못이 아니야.

엄마가, 어른들이 만들어 놓은 세상이 이렇게 엉망이구나.

사람들이 날마다 죽어 나가는데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 현실이 너를 죽게 만들었고,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 죽게 놔두고 있구나.

미안함에 울고 있을 자격도 없는 엄마가 너의 죽음을 말하며,

다시는 일하다 죽지 않는 세상이 오기를 바라며,

너의 이름을 부르며 이야기하고 있단다.

미안하다.

마이스터고에 보내서,

너무 어린 너를 현장실습에 보내서,

힘들다 말할 때 돌아오라고 하지 않고 조금만 견디어 보자고 해서 너무 미안해.

미안해, 아들…….”

지금도 곳곳의 일터에서 사람이 죽어 나가고 있습니다. 당신의 일터는 안전한가요? 안전하지 않아도 직장이 있으면 감사한가요? 안전하게 일할 수 있게 현장을 만들어 달라는 게 과한 요구인가요? 부당한 일을 하지 않으면 잘려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는 게 당연한 일인가요?

현장은 현장 근무자가 가장 잘 안다고 확신합니다. 일하는 노동자 스스로가 말해야 합니다. 바뀌달라고, 안전하게 바꾸어 달라고 외쳐야 합니다.

나만 아니면 된다는 생각은 버리고 같이 안전하게 일하고 함께 퇴근할 수 있게 노동자인 우리가 먼저 외쳐봅시다. 함께 외쳐야 우리가 죽지 않고 살 수 있습니다. 함께 일하는 동료도 또 다른 나 자신임을 잊지 말고, 집단 괴롭힘이나 폭행이 없는 직장 분위기를 만들어 가는데 각자가 다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그것이 가장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기업은 가족 같은 회사라고 떠들지만 말고 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일하며 지

낼 수 있게 해야 합니다. 문화가 있는 회사라고 광고만 그럴싸하게 하지 말고, 강요된 초과노동, 억압과 폭력, 죽음의 문화를 바꿔가야 합니다. 위험한 요소들을 제거하고, 노동자들이 스스로 느끼는 안전문제를 거리낌 없이 제기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이윤을 넘어 안전에도 눈을 돌릴 수 있도록 노동자들에게 시간과 여유, 그리고 적절한 교육이 제공되어야 합니다. 사고가 나면 은폐하는 문화가 아니라, 다시는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국가는 법을 만들고 법이 잘 지켜지게 감시해서 국민들을 지켜야 합니다. 여전히 산안법, 근로기준법의 안전규정이 지켜지지 않아 다치고 죽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더욱 철저히 감시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안전에 구멍이 뚫린 일터를 보수하는 법을 만들어야 합니다. 사람이 죽어나가는 현장이 넘치는데, 아직도 국회의원들은 법적 보호망을 만들지 않았습다. 21대 국회에서도 이런 직무태만 국회가 된다면 없는 게 낫습니다.

비정규직으로 법의 사각지대에서 아무런 보호를 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의 목숨을 법이 지켜야 합니다. 위험작업의 외주화를 금지하고, 중대재해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기업처벌을 강화해야 합니다. 이번에는 꼭 법을 만들어서 이 처참한 죽음의 행렬을 멈춰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재해 피해가족 네트워크 '다시는'

● 산업재해 피해가족들이 모였습니다.

故 김용균님의 사고 후, 산재 피해가족들이 김용균 님의 부모님을 만나서 위로를 나누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같은 아픔을 겪은 사람들만 주고받을 수 있는 위로의 시간을 통해, 피해가족들이 모임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자라났습니다. 그런 공감과 위로가 무책임한 회사, 정부와의 싸움을 이어가는 큰 힘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 나라에서는 여전히 매년 2,000명을 훌쩍 넘는 노동자들이 일터에서 목숨을 잃습니다. 어제 누군가 죽었던 바로 그곳에서, 똑같은 이유로 오늘도 죽고 있습니다.

● 산재피해가족들은 말합니다.

“다시는 내 아이와 같은 죽음이 없어야 한다.”

“다시는 나와 같은 아픔을 겪는 이가 없어야 한다.”

죽지 않고 일할 수 있는 사회, 병들지 않고 다치지 않고 일할 수 있는 사회를 위해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산재피해가족들이 앞장 선 투쟁으로 조금은 더 안전한 사회로 나아가고 있지만, 여전히 이 분들의 힘이 필요합니다. 김용균 투쟁을 통해 이어진 산재 피해가족들은 '다시는'이라는 모임을 통해 교류하며 안전한 일터를 위해 함께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올해 '다시는'의 가장 중요한 일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제정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 '다시는'에 함께 하는 사람들

노동건강권활동을 원하는 산업재해피해가족들과 노동건강권을 위해 활동하는 단체의 활동가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름	현재 소속처
강석경	CJ 진천 고교 현장실습생 고 김동준님 어머니
김도현	청년건설노동자 고 김태규님 누나
김미숙	태안화력 비정규직청년노동자 고 김용균님 어머니
김용만	군포 토다이 현장실습생 고 김동균님 아버지
신현숙	청년건설노동자 고 김태규님 어머니
이용관	tVN 고 이한빛 PD 아버지,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이사장
이한솔	tVN 고 이한빛 PD 동생,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이사
홍순성	LGU+고객센터 전주 고교 현장실습생 고 홍수연님 아버지
권미정	김용균재단
명숙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이상수	반올림
이현정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실
정우준	노동건강연대
진재연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 김용균재단

- 고김용균님의 죽음의 원인을 밝힐 진상규명위원회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내고, 정부와 회사의 책임을 분명히 함.
- 위험작업 2인 1조 긴급조치와 안전인력 확충을 이끌어내어, 이후 비슷한 위험에서 사망을 방지함
- 일부 한계는 있지만, 발전사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이루어냄
- 산안법 개정의 필요성을 알려내고, 28년 만에 산안법 전부 개정을 이끌어냄
- ‘위험의 외주화’ 문제를 우리 사회 주요한 의제로 만들어냄

▶ 현장실습생 유가족

- 죽음을 부르는 현장실습생 제도의 개선을 촉구하는 활동
책 <알지 못하는 아이의 죽음>, 은유, 돌베개, 2019

▶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 방송노동자들의 노동인권 개선을 위한 활동

▶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 재난참사 사건을 기록했고 현재는 산재사건을 기록하는 활동을 진행 중

▶ 반올림

- 반도체·전자산업 노동자들의 직업병 문제를 알리고, 기업과 정부의 책임을 촉구하는 활동
- 반도체·전자산업 43명의 11개 질병에 대해 산재를 인정받음
- 노동자 입증책임을 완화하고, 회사와 정부의 조사미비, 정보은폐를 노동자에 유리하게 해석하는 대법판결을 이끌어냄
- 10여 년의 투쟁과 1,023일의 농성 끝에 삼성의 기업보상에 대한 양보를 이끌어냄
- 삼성전자의 예방대책과 안전보건기금 등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냄

● '다시는'이 걸어온 길

[2018년]

- ▶ 2018년 12월 11일 ~ 2019년 2월 9일 고 김용균 사망사고 투쟁.
- ▶ 2018년 12월 20일(목) 오전 10시 반, 국회 앞 기자회견 및 모임
산재 재난·안전사고 피해 가족 공동기자회견 및 의견서 국회 전달, 모임
“국회는 죽음을 더 이상 방치하지 말라.
위험의 외주화를 막는 산안법,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즉각 통과시켜라”

[2019년]

- ▶ 2019년 1월 17일(목) 오전 11시, 청와대 앞 기자회견 및 대통령에게 보내는 의견서 전달, 모임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 죽음의 외주화 중단! 산재·재난·참사 유가족과 피해자 공동기자회견
- ▶ 2019년 1월 30일 오전 11시, 청와대 앞 기자회견 및 전교조 간담회
“직업계고 현장실습 제도 개악안 중단!
값싼 노동력 제공하는 현장실습으로 회귀하자는 것인가?
더는 희생을 강요하지 마라!”

- ▶ 2019년 2월 20일(수) 15시, 유가족과 함께 하는 기업처벌법 이야기마당 및 모임
- ▶ 2019년 3월 6일 저녁 7시, 고 황유미 12주기 및 반도체·전자산업 산재사망 노동자 추모문화제
- ▶ 2019년 5월 24일 ~ 6월 12일, 생명안전시민넷 특집 안전 칼럼, ‘산안법 하위법령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며 대통령께 드리는 편지’, 김미숙/황상기/이용관/이상영/김도현
- ▶ 2019년 5월 30일, 충북 현장실습 이야기마당
- ▶ 2019년 6월 11일, 산안법 하위법령 개정안 공청회
- ▶ 2019년 6월 12일, 부산 현장실습 이야기마당
- ▶ 2019년 6월 14일, 산안법 하위법령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는 산재 및 재난 참사 피해가족 공동 기자회견
- ▶ 2019년 6월 14일, 한혜경 산재인정 축하음악회, “당신에게서 꽃내음이 나네요”
- ▶ 2019년 6월 20일, 충남 현장실습 이야기마당
- ▶ 2019년 6월 26일, ‘진실의 힘 인권상’ 시상식
- ▶ 2019년 6월 26일, [나, 조선소노동자] 북콘서트
- ▶ 2019년 6월 30일, 산재사망노동자추모제
- ▶ 2019년 7월 16일, 보건의료학생모임 ‘매듭’ 간담회
- ▶ 2019년 7월 17일, 일학습병행제 지원법 반대 기자회견
- ▶ 2019년 7월 18일, 공주 해병대 캠프 추모제

- ▶ 2019년 7월 23일, 제주 중앙고 교장 간담회
- ▶ 2019년 7월 24일, 제주 영주고 교사 간담회
- ▶ 2019년 7월 25일, [알지 못하는 아이의 죽음] 북토크
- ▶ 2019년 7월 29일~8월 3일, 제주생명평화대행진
- ▶ 2019년 8월 1일, [가장 보통의 드라마] 북토크
- ▶ 2019년 8월 8일, 일학습병행제 지원법 관련 박주민 의원 면담
- ▶ 2019년 8월 10일, 김용균 추모낭독노래극 '기다림'
- ▶ 2019년 8월 20일, 일학습병행제법 문제점과 대안 토론회
- ▶ 2019년 8월 20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경기간담회
- ▶ 2019년 8월 22일, [알지 못하는 아이의 죽음] 제주북토크
- ▶ 2019년 9월 4일, 과로사 과로자살 워크숍
- ▶ 2019년 9월 24일, [김용균이라는 빛] 북콘서트
- ▶ 2019년 9월 26일, 경기지역 현장실습 간담회
- ▶ 2019년 9월 27일, 부천 현장실습 이야기마당
- ▶ 2019년 10월 2일, 전남 현장실습 이야기마당
- ▶ 2019년 10월 15일, 경기도 교육청 향의 방문
- ▶ 2019년 10월 16일, 위험의 외주화

- ▶ 2019년 10월 25일, 고이한빛PD 3주기 추모문화제
- ▶ 2019년 10월 26일, 김용균재단 출범대회
- ▶ 2019년 10월 23일~25일, 사회적참사 피해가족 워크숍
- ▶ 2019년 10월 28일~29일, 아시아산재및환경피해자권리네트워크(안로브) 대회
- ▶ 2019년 11월 7일~10일, 트라우마 치료
- ▶ 2019년 11월 18일~19일, 고이민호 2주기 추모문화제
- ▶ 2019년 12월 5일, 현장실습 전교조 간담회
- ▶ 2019년 12월 9일, 방송노동자 주52시간 기자회견
- ▶ 2019년 12월 9일, 방송노동자 주52시간 기자회견
- ▶ ‘다시는’ 활동 평가 및 활동방향 논의 : 2019년 11월 ~

[2020년]

- ▶ 2020년 1월 17일, 문중원열사 요구 설 전 해결촉구 시민대책위 오체투지 행진
- ▶ 2020년 1월 17일, [김용균 이후를 말하다] 북콘서트
- ▶ 2020년 2월 9일, 마사회 고 문중원기사 추모문화제
- ▶ 2020년 2월 15일, 한국마사회 적폐청산촉구 유가족 서명운동
- ▶ 2020년 3월 8일, 문중원 열사 노동사회장 추모문화제
- ▶ 2020년 4월 1일, 재난.산재참사 유가족 15개 생명안전과제 제안

- ▶ 2020년 4월 6일, 고 김태규님 1주기 추모주간 선포 기자회견
- ▶ 2020년 4월 7일, 인권위 권고 이행 촉구 기자회견
- ▶ 2020년 4월 9일, 청년 건설노동자 고 김태규님 산재사망 추모 집중선전전
- ▶ 2020년 4월 10일, 고 김태규 장지 참배 및 수원검찰청 규탄 기자회견
- ▶ 2020년 4월 27일, 2020 최악의 살인기업선정식
- ▶ 2020년 4월 28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입법발의자 선언대회
- ▶ 2020년 5월 2일, 이천 한익스프레스 산재사망
- ▶ 2020년 5월 6~8일, 다시는 워크숍
- ▶ 2020년 5월 12일, 한익스프레스 남이천 물류창고 신축현장 산재사망 원인 진단 긴급 토론회
- ▶ 2020년 5월 12일, 김용균재단 개소식
- ▶ 2020년 5월 13일, 고 이재학PD 100일 추모문화제
- ▶ 2020년 5월 19일 ~ , 다시는 드로잉배우기
- ▶ 2020년 5월 20일, 구의역참사 4주기 추모 선포식 기자회견
- ▶ 2020년 5월 21일, 한익스프레스 산재사망 유가족 면담

본인들 가족이 죽어도 이렇게 면죄부를 주었을 겁니까?

김도현 / 청년건설노동자 고 김태규 누나

제 동생 태규는 2019년 4월 10일 수원 건설 현장에서 추락사 했습니다. 가장 높은 곳에서 일했지만, 일용직 노동자라는 이유로 안전화, 안전모, 안전벨트 같은 안전장비도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태규를 살릴 수 있었을 안전대, 추락방지망 같은 안전장치도 없었습니다. 승인받지 않은 채 불법으로 운행된 화물용 승강기에 태워진 태규는 그렇게 목숨을 잃었습니다.

시공사 현장 차장은 팔에 깁스를 한 채 5층 엘리베이터에서 신호수도 없이 지게차를 운행하기도 했습니다. 안전교육도 했다고 했지만, 이 역시 거짓이었습니다. 첫날 태규와 함께 일했던 태규 형이 증인입니다.

회사는 태규 죽음에 대해 사과를 하기는커녕 근로계약서를 위조하는 등 회사 잘못을 감추기 급급했습니다. 얼마 전, 고용노동부에서 조사가 있었는데요. 근로계약서 위조는 근로기준법 위반이 분명한데 검찰이 불기소한 것이 이해가 안 된다며 근로감독관이 되레 저한테 되묻기까지 했습니다.

정신없이 장례를 치른 후, 태규가 어디서 어떻게 죽었는지 알기 위해 현장에 갔습니다.

2019년 4월 14일 일요일이었습니다. 사고 지점인 5층에 엘리베이터가 있었는데, 태규 것으로 추정되는 피범벅인 안전모가 쓰레기와 함께 버려져있었습니다. 피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4월 15일인 월요일, 다시 현장에 방문했습니다. 전면 작업 중지 명령이 내려진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5층에 있었던 엘리베이터가 1층으로 내려와 있었습니다. 현장에 있는 시공사 은하 종합건설 이사, 현장차장에게 물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왜 1층에 내려져있나?”, “1층에 있는 게 보기가 좋아서 내렸다”라는 어이없는 대답을 들었습니다. 시공사 이사는 본인이 내리라고 지시했다고 했습니다. “경찰이 내려도 된다고 해서 내렸다.”라고 했지만 거짓말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 아래에 있는 심장 제세동기로 태규를 살리고자 심폐소생술을 했다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심장 제세동기는 그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현장을 훼손했지만, 시공사 이사는 ‘혐의없음’으로 불기소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고용노동부는 사실상 사측의 증거 은폐를 용인하기까지 했습니다.

발주처이자 건축주인 ACN 관계자는 안하무인 막말을 퍼붓습니다. “우리가 피해자다. 재수 없게 여기서 죽어 다 된 밥에 돈 들게 만든다.”, “엘리베이터에서 떨어졌으니 엘리베이터 업체에 연락하라”라며 인면수심 태도로 저를 조롱하고 밀치기까지 했습니다. 공사현장에 문지기를 배치하고 사유지라면서 들어가려면 공문을 보내라고 합니다. 안 그러면 신고한답니다.

이런 ACN이 경기도지사에 의해 유망 기업으로 인증까지 받았습니다. 불법 다단계 하도급 구조가 빚어낸 죽음임이 분명한데 태규를 죽게 만든 회사가 상도 받는 세상이니 더욱 억울한 맘이 듭니다.

7개월이 지났을 무렵, 사고 당시 CCTV 영상을 봤습니다. 태규가 떨어졌을 때 80m를 내달려 뛰어가 응급조치를 했다던 시공사 이사는, 화면 속에서 바지 주머니에 두 손을 꽂은 채 동네 마실을 가듯 어슬렁거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짐승이 죽어도 이럴 수는 없습니다. 태규 죽음이 이들에게 어떻게 취급되었고, 또 어떻게 취급될지를 알 수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실제로 이후로도 사측의 태도는 CCTV 화면 속 시공사 이사의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저희 유가족이 보름 동안 밤을 새워 조사했던 자료를 경찰에게 제출하며 강력히 재수사를 요구했습니다. 경찰은 시공사 대표 등 6명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수사결과를 검찰에 올렸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실무자들의 책임만 묻고, 시공사 대표 등 실제 책임이 있는 사람들을 무혐의 불기소 처리하여 태규와 저희 유가족을 두 번 죽였습니다. 경찰의 부실했던 초동수사보다 못한 검찰의 처분이었습니다.

지난 5월 15일, 1심 2차 공판이 있었습니다. 검찰은 업무상 과실치사, 산업 안전보건법 위반, 승강기안전관리법 위반 등으로 기소한 시공사 현장소장과 현장 차장에게는 징역 1년과 징역 10개월을 구형했습니다. 승강기 제조업자에게는 벌금 300만 원, 은하 종합건설에는 벌금 10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업무상 과실치사의 양형규정에 비해서도 낮았습니다. 재판부는 감정적 부분과 당 재판부가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제한적이라며 이런 상황을 감안해서 기사를 써 달라 기자들에게 요구하기까지 했습니다.

법 자체의 처벌규정이 미약한데, 양형규정을 통해 처벌수위를 한 번 더 낮추고, 법을 적용하는 검찰과 법원이 또 한 번 무력화하는 상황입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이래서 노동자들이 반복해서 죽는 것입니다. 노동자가 죽어도 실형을 받는 경우가 거의 없고, 이런 상황을 바꿀 힘이 있는 발주처와 사장들은 기소도 되지 않고, 기업은 벌금 몇 푼 내고 끝나니 왜 기업이 돈과 노력을 들여 위험을 없애고 안전한 사업장을 만들겠습니까?

검찰과 재판부에게 묻고 싶습니다. 본인들 가족이 죽었어도 이렇게 면죄부를 주었을 겁니까? 왜 죽은 태규는 있는데 죽게 만든 회사는 죄가 없습니까? 이렇게 면책된 기업들이 무엇이 무서워서 안전 관리에 신경을 쓰겠습니까? 이 나라 정부는 도대체 누구의 편입니까?

노동자 잘못으로만 몰아가는 관행부터 꼭 바뀌어야 합니다. 노동자가 왜 죽는지 기업의 책임을 규명해야 합니다. 그런데, 진상 규명은 고사하고 책임자 처벌 역시 눈앞이 캄캄합니다. 꿈에서라도 태규를 볼 면목이 없습니다.

매일같이 노동자들의 죽음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죽음에 대한 책임을 엄중히 물어 처벌해야 합니다. 그래야 바뀔 수 있습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으로 더는 노동자들이 죽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노동자가 죽어도 아무렇지도 않은 세상을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 고 김태규님 산재사망 대책회의 일지

● 일정 개요

날짜	내용	관련기관	비고
04월 10일	08:14 고색파출소 신고		
04월 10일	4/10 작업중지명령	경기고용지청	
04월 12일	성명서 발표 (일하는2030)		
04월 14일	유가족 및 고인 친구들이 사고 현장 방문조사		
04월 19일	진상규명요구기자회견	경기도의회 브리핑룸 / 주최: 유가족 및 시민	
04월 25일	진상규명·책임자 처벌 대정부 촉구 기자회견	국회 정론관 / 주최: 유가족, 일하는2030, 청년민중당	
05월 01일	2명 검찰 송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 현장소장과 은하종합건설 차장)		
05월 06일	유가족 (어머니, 누나) 경기도본부 사무실 방문 면담		
05월 08일	일하는2030 수원역 촛불선전전		
05월 09일	현장소장 검찰 송치	경기고용지청	
05월 09일	경기고용노동지청산재 예방지도과방문면담		
05월 15일	검찰 대응 관련 자문 (민주노총 법률원)		
05월 16일	고 김태규님 산재사망 대책사업 준비회의		
05월 20일	고 김태규님 산재사망 진상규명 요구 청년 건설노동자 기자회견	국회정론관	민주노총경기, 건설노조수도권남부
05월 22일	대책회의 구성 및 참여 보고	경기도본부 운영위	

05월 24일	청년 용역 노동자 고 김태규님 산재사망 대책회의	대책회의 개시	
05월 30일	경기고용노동지청 산업재해예방지도과 면담		
06월 13일	고 김태규님 산재사망 고소·고발 및 재수사 촉구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개최	고소·고발장 접수	
07월 05일	고 김태규님 산재사망 추모문화제		
07월 16일	서부경찰서 형사과장·강력계장 면담	발주처 수사, 업정수사	
07월 22일	고소인 조사	경기도 서부경찰서	
07월 24일	경기고용노동지청 산재예방지도과 면담		
08월 20일	다시는' 간담회		05월 30일
08월 26일	서부경찰서 강력계장 면담		07월 24일
08월 30일	수원시장 면담		10월 21일
09월 01일	서부경찰서1인시위		
09월 06일	서부경찰서 강력계장 면담		
09월 24일	근로복지공단 수원지사장 면담		
10월 11일			
10월 15일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위험의 외주화 금지법 제정!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재개정을 위한 경기지역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송옥주 의원	
10월 21일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위험의 외주화 금지법 제정!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재개정을 위한 경기지역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경기고용지청 앞	

10월 21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위험의외주화금지법 제정!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위한 경기지역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대책회의, 민주노총 공동주최	
10월 24일	매일노동뉴스		
10월 30일	경기고용노동지청 일대에서 16명이 참여하여 1인 시위 및 집중선전전을 진행		
11월 20일	서부경찰서 사건 검찰 송치 관련 설명회		
11월 25일	근로복지공단 수원지사 댓글관련중부경찰서고 소인조사	서부경찰서	
11월 26일	기소, 엄벌 촉구 기자회견	수원지방검찰청	“대책회의” 대표자 14명의 자필 탄원서 수원지검 접수
12월 02일	고 김태규님 산재사망 책임자 기소촉구 기자회견	국회 정론회관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 명숙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상임활동가), 정종훈 목사 (수원시민사회단체협의회 상임대표), 정병욱 변호사 (민변 노동위원회 위원장), 김도현 (고 김태규님의 누나),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한영수 사무처장, 이용관 (고 이한빛PD 아버지 이용관)
12월 10일	로복지공단 수원지사 김태수 고소고발건에 대한 수원중부경찰서 불기소 검찰 송치	서부경찰서	
12월 17일	수원지검 앞 1인 시위 시작	(유가족)	
12월 20일	근로복지공단 수원지사 산재보상부장 김태수 징계 확정 통보		

● **엄중처벌, 재정신청관련 탄원서 재판부 접수**

1. 탄원서 집계

구 분	서명방식	수기작성	합계	비 고
엄중처벌 탄원서	145	120	265	
재정신청탄원서	1254	4	1258	염태영 수원시장 첨부

탄원서제출

사 건 2019고단8017 산업안전보건법위반등
 피고인 주식회사 은하종합건설 외 3
 피해자 신현숙 외 1

위 사건에 관하여 피해자의 대리인은 다음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하는 탄원서를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첨부자료

1. 탄원서 : 민주노총경기도본부 양경수 본부장 외 264명
 (자필작성 120명)

2020. 5. 14

위 피해자의 대리인 법무법인 송경
 담당 변호사 정병욱

수원지방법원 귀중

탄원서제출

사 건 2020초재285 재정신청
피의자 주식회사 은하종합건설 외 3
피해자 신현숙 외 1

위 사건에 관하여 피해자의 대리인은 다음과 같이 탄원서를 제출하오니 이에 따른 공소제기결정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첨부자료

1. 탄원서 : 고 김태규 모친, 수원시장 염태영, 민주노총경기도본부 양경수 외 1255명

2020. 5. 14.

위 피해자의 대리인 법무법인 송경

담당 변호사 정병욱

수원고등법원 귀중

● 검찰구형 규탄성명

1. 검사 공소내용과 구형

재판일: 2020. 05.15.

1) 검사 공소내용과 구형

피고	직책	직무	검사구형	위법사항
은하종합 건설	시공사		1000만원	산업안전보건법, 승강기안전관리법,
김현기	현장소장	안전보건 총괄책임	1년	업무상 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승강기안전관리법 위반
문혁민	차장	승강기 운용자	1월	업무상 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승강기안전관리법 위반
이균희		승강기 제조업자	300만	승강기안전관리법

2) 업무상 과실치사상 관련 법규정

제268조(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3) 기타

검사의 구형이 업무상과실치사죄의 양형규정에 비해 낮음.

2. 규탄 성명서

고 김태규군 산재사망사고에 대한 검찰의 구태를 규탄한다.

오늘 고 김태규군 재판에서 검찰의 구형은 시대의 요구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대형 산재사망사고 발생으로 전국이 떠들썩한 시국에서도 기업을 우선하고 생명을 경시하는 태도는 변하지 않았다.

2019년 4월 10일에 청년 노동자 김태규는 건설현장에서 추락사로 사망했다. 1년 동안 김태규군의 가족은 검찰의 원청 불기소, 법원의 솜방망이 처벌이 산재사고를 방조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을 끊임없이 주장해 왔다. 경기지역의 노동, 시민, 사회단체는 대책회의를 구성해서 1인 시위, 기자회견, 집회를 통해서 산재사망사고를 없애는 노력을 하고 있다.

검찰은 원청인 ANC는 물론이고 시공사인 은하종합건설의 대표도 기소하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오늘 검사의 구형은 산재사망사고에 경종을 울리지 못하고 산업재해기업에 면죄부를 줄 것이다.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 승강기안전관리법 위반 등으로 기소한 은하종합건설의 현장소장과 현장관리자에게 징역1년과 징역 10월을 구형하고 승강기제조업자에게는 300만원 벌금, 은하종합건설에는 1000만원 벌금을 구형했다. 기존의 검찰 관행을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일을 한 노동자의 죽음은 있었으나 일을 시킨 기업의 책임은 없다.

산재사망사고를 줄이려면 매 사건에 대한 기업의 책임을 중대하게 다뤄야 한다. 그러나 오늘 검찰의 구형에서도 기업의 책임은 고작 벌금 1000만원 일 뿐, 대표이사 사장의 기소도 없고 단지 현장의 관리자만을 기소하고 처벌하고 있다. 그 처벌 또한 솜방망이로 회사는 전혀 위협을 느낄 필요가 없는 정도이다. 영국의 기업살인법 같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입법이 보완되지 않는 이상 산재사망사고와 참사는 계속될 것이다.

고김태규군 산재사망대책회의는 검사의 구태의연한 구형을 규탄하면서 이후 재판부의 판단을 지켜 볼 것이다. 검찰의 생명에 대한 경시, 노동안전의 중요성을 무시하는 기소와 구형은 변해야 한다. 기업에게 면죄부를 주게 되는 재판 결과로 노동현장의 죽음은 줄일 수 없다. 대책회의는 이후 재판부의 판단을 지켜보면서 검찰의 생명을 경시하는 풍조, 노동안전에 대한 불감증을 개혁하도록 할 것이다.

2020년 5월 15일

고김태규군 산재사망대책회의

3. 유가족 성명서

‘故 김태규 청년 추락사’ 1심 2차 공판 및 검찰 구형 유가족 성명

제 동생 태규는 작년 4월 10일 수원 건설 현장에서 추락사 했습니다. 일용직 노동자라는 이유로 가장 높은 곳에서 일했지만 안전화·안전모·안전벨트 등 안전장비를 지급받지 못했으며 또한 안전대·추락방지 망 역시 없었습니다. 시공사 은하종합건설은 미승인으로 불법운행한 화물용 승강기에 태규를 태워 죽게 만들었습니다.

현장 차장은 큰 부상으로 깁스처리된 팔로 20미터 높이 엘리베이터에서 신호수도 없이 지게차를 운행했습니다. 안전교육도 했다고 했지만, 이 역시 거짓이었습니다. 이는 모두 첫날 같이 일했던 태규 형의 증언입니다.

시공사는 근로계약서를 위조하는 등 죽음에 대한 사과를 하기는커녕, 회사 잘못을 감추기에 급급했습니다. 이에 대해 얼마 전 고용노동부가 조사

를 실시했습니다. 이때 근로감독관은 근로계약서 위조에 대해 근로기준법 위반임이 분명한데도 검찰이 불기소 한 사실에 대해 이해되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우리 유가족은 3일장을 치른 후 태규가 어디서 어떻게 죽었는지 알기 위해 현장에 갔습니다. 4월 14일 일요일, 사고 지점인 5층에 엘리베이터가 있었습니다. 태규 것으로 추정되는 피 묻은 안전모가 쓰레기와 함께 버려져 있었습니다. 4월 15일인 월요일, 2차로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전면 작업 중지 명령이 내려진 상태였습니다. 5층에 있었던 엘리베이터가 1층으로 내려와 있었습니다. 현장에 있는 시공사 은하 종합건설 이사, 현장차장에게 물었습니다. “왜 1층에 내려져있냐” 라는 저의 질문에 “1층에 있는 게 보기가 좋아서 내렸다”라고 답했습니다. 시공사 이사는 본인이 내리라고 지시했다고 합니다. “경찰이 내려도 된다고 해서 내렸다”라고 증언했으나 이는 거짓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 아래에 있는 심장 제세동기로 태규를 살리고자 심폐소생술을 했다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심장 제세동기는 그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현장을 훼손한 파렴치한 짓을 저질렀지만, 시공사 이사는 결국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고용노동부는 사실상 사측의 증거 은폐를 용인하기까지 했습니다

발주처이자 건축주인 ACN 관계자는 “우리가 피해자다. 재수 없게 여기서 죽어 다 된 밥에 돈 들게 만든다”는 발언을 했습니다. 문지기를 배치해놓고 사유지라며 출입을 막았습니다. 또한 “엘리베이터에서 떨어졌으니 엘리베이터 업체에 연락하라”라며 인면수심 태도로 저를 조롱하고 밀치기까지 했습니다. 이런 ACN은 경기도지사에 의해 유망 기업으로 인증까지 받았습니다. 불법 다단계 하도급 구조가 빚어낸 죽음임이 분명한데, 태규를 죽게 만든 회사는 우수 기업으로 상까지 받은 것입니다.

7개월이 지난 후, 당시 CCTV 영상을 봤습니다. 태규가 떨어졌을 때 80m를 내달려 뛰어가 응급조치를 했다던 시공사 이사가 실제로는 바지 주머니에 두 손 넣고 동네 마실 가듯 어슬렁거리며 걷는 모습이 고스란히 찍혀있었습니다. 태규의 죽음이 이들에게 어떻게 취급되었는지 알게 해주

는 모습이었습니다.

저희 유가족이 보름 동안 밤을 새워 조사했던 자료를 경찰에게 제출하여 강력히 재수사를 요구했습니다. 그 결과 시공사 대표 등 6명에 대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올렸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시공사 대표와 발주처 대표를 모조리 무혐의 불기소 처리하며 태규와 저희 유가족을 두 번 죽였습니다. 아니, 이 나라의 산재사망 유가족들을 다시 한 번 절망으로 밀어넣은 처분입니다.

지난 5월 15일, 산재사망 책임자인 시공사와 발주처 대표가 모두 빠진 반쪽짜리 1심 2차 공판이 있었습니다.

검찰은 업무상 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 승강기안전 관리법 위반 등으로 기소한 시공사 현장소장과 현장 차장에게는 각각 징역 1년과 징역 10월을 구형, 승강기 제조업자에게는 300만 원 벌금, 은하 종합건설에는 1000만 원 벌금을 구형했습니다. 개탄스럽습니다. 검사의 구형은 업무상 과실치사의 일반 양형규정에 비해서도 턱없이 낮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재판부는 '재판부가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제한적'이라며, 기자들에게 기사의 내용에 반영해줄 것을 요구하기까지 했습니다.

검찰과 재판부에게 묻고 싶습니다. 본인들 가족이 죽었어도 이렇게 면죄부를 줄 생각입니까? 왜 죽은 태규는 있는데, 죽게 만든 회사는 죄가 없습니까? 이렇게 면책된 기업들이 무엇이 무서워서 안전 관리에 신경을 쓰겠습니까? 이 나라 정부는 도대체 누구의 편입니까? 진상 규명은 고사하고, 이런 법적 책임으로 처벌과 재발방지가 가능할지 눈앞이 캄캄합니다. 꿈에서라도 태규를 볼 면목이 없습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으로 노동자 잘못으로만 몰아가는 관행부터 꼭 바뀌야 합니다. 재판부와 검찰에게 다시 한 번 책임자 기소와 엄벌을 요구합니다.

2020년 5월 18일 청년 건설노동자 故 김태규 유가족

이한빛PD 사망 이후 방송업계의 노동환경과 산업안전의 문제점

이용관 / 고 이한빛PD 아버지,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이사장

1. 비정규직 노동자 투쟁과 이한빛PD의 죽음

CJ E&M의 tvN 드라마 ‘혼술남녀’에서 조연출로 일하던 故이한빛PD가 2016년 10월 26일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발생했다. 故이한빛PD는 CJ E&M 방송부문 tvN 제작본부 기획제작 2CP 드라마 <혼술남녀> 팀에서 조연출로 활동하였다. 故이한빛PD는 CJ E&M의 tvN의 정규직 공채 드라마 PD로 입사하였으며 tvN의 드라마 ‘혼술남녀’의 신입 조연출로서 의상, 소품, 식사 등 촬영 준비, 데이터 딜리버리, 촬영장 정리, 정산, 편집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드라마 <혼술남녀>는 전체 16회 중 4회분을 사전 촬영으로 진행하였으나, 방영을 앞둔 8월 초에 촬영,장비,조명 담당 외주업체 및 소속 스텝이 교체되었다. 이 과정에서 도급 계약으로 계약된 일부 스텝이 부당해고로 교체되었다. 재촬영을 하는 과정에서 제작 스케줄이 빠듯해지고 드라마 스텝의 노동환경이 극도로 악화되었다.

이한빛PD는 대학시절부터 사회 및 노동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후원과 활동을 해왔으며, 특히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활동을 해왔다. 기륭전자와 이랜드 비정규직 투쟁에 참여하면서 심각한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 분노하며 함께 연대하고 투쟁했다.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투쟁에도 연대하고 용산 참사, 세월호 참사, 구의역 참사 등 사회적 참사에도 연대와 후원 활동을 아끼지 않고 했던 아름다운 청년이었다.

이한빛PD는 이처럼 이 사회의 약자와 소외받는 사람과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치열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실천적인 삶을 살던 청년이었지만 방송노동 현

장의 정규직 PD로서 비정규직을 관리하는 위치에 서게 됐다. 방송 제작현장 비정규직 스태프들의 처참한 노동환경에 절망하고 비정규직 스태프들의 노동 조건 개선을 위해 싸우며 항거했지만, 돌아온 건 방송제작 현장에서 배제된 현실과 탄압뿐이었다. 한 사람의 문제 제기만으로는 개선될 수 없었던 방송제작 현장의 구조적인 문제 앞에 이한빛PD는 절규하는 글을 남기고 갔다.

“촬영장에서 스태프들이 농담 반 진담 반 건네는 ‘노동착취’라는 단어가 가슴을 후벼 찢어요.

물론 나도 노동자에 불과하지만,

적어도 그네들 앞에선 노동자를 쥐어짜는 관리자 이상도 이하도 아니니까요.

하루에 20시간 넘는 노동을 부과하고

두세 시간 재운 뒤 다시 현장으로 노동자를 불러내고

우리가 원하는 결과물을 만들기 위해 이미 지쳐있는 노동자들을 독촉하고 등 떠밀고

제가 가장 경멸했던 삶이기에 더 이어가긴 어려웠어요.”

유서에는 비정규직을 착취해야만 하는 현실에 대한 가슴 아픈 이야기가 담겨있었다. 특히 외주업체를 정리해고하는 임무를 부여받으며 방송업계에 대한 절망감이 커졌고, 결국 극단적인 선택에 이르게 되었다.

이한빛PD 가족은 청년유니온 등 노동조합 및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tvN ‘혼술남녀’신입조연출사망사건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를 구성하고 사건에 대응을 시작했다. 대책위는 6개월이라는 조사과정을 거쳐 대응을 준비하였다. 긴 조사과정에서 회사 측의 모욕과 무시가 반복되었지만, 현장의 스태프들을 직접 찾아다니며 자료를 확보하였고, 6개월 뒤 기자회견을 통해 공개적으로 대기업 CJ E&M과 싸움을 시작했다.

방송업계의 부당한 관행에 항거한 죽음으로 촉발된 노동자의 저항이었기에, 시민과 종사자의 폭발적인 관심과 지지를 받을 수 있었다. 종사자의 증언과 시청자의 지지는 CJ E&M으로 하여금 큰 부담을 느끼게 만들었다. 결국 기자회견 이후 두 달간의 투쟁에서 CJ E&M은 공식적인 사과와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였다.

공식 사과 이후 유가족은 보상금으로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를 설립하였

다. 이한빛PD의 유지를 이어받아 방송미디어 노동자들의 노동인권 문제 해결을 위한 방송미디어산업의 노동인권 운동을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다.

2. 방송 노동현장의 비정규직으로서 삶과 산재 사고

방송노동계의 가장 고질적인 노동문제는 장시간 노동과 턴키계약에 의한 용역계약, 프리랜서로 구두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다. 노동자의 최소한의 권리도 보장받지 못하고, 아예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계약서도 체결하지 못하고, 피라미드형 하도급 구조와 프리랜서 계약 방식, 절대복종을 강요하는 도제방식의 문화가 팽배하다. 외주제작 형식의 하도급 구조는 턴키계약이라는 변종 계약 방식으로 노동자를 압박하였고, 주당 120시간이라는 살인적인 노동스케줄이 가능하게 만들었다. 프리랜서 계약과 구두 계약으로 인해 근로기준법마저 적용받을 수 없고 4대 보험도 들지 못하고 있다.

연출 PD와 제작 담당 부서장 등에게 복종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는 도제식 문화로 인해, 카메라 뒤의 사람들은 각종 폭력에 노출되고 있다. 인격적 모욕, 폭력적 업무 지시, 계약 형태의 문제 등에서 발생하는 현장의 갑질, 성폭력 등은 피라미드 구조로 내려오고 있다. 때문에, 가장 말단의 막내 스태프에게 다가오는 폭력성은 극에 달할 수밖에 없다.

방송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산재사고가 나도 산재보상을 받을 수 없는 위험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최근에 <화유기>, <킹덤>, <서른이지만 열일곱입니다> 등 현장에서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하는 사고가 연이어 발생했다. 미계약 노동자로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사고가 나도 드러나지 않게 처리하거나 노동자가 개인적으로 치료받는 일이 많다.

카메라 뒤의 노동자들은 자신의 이름을 걸고 현장의 문제를 제기할 경우, “너 이 바닥에 발 못 붙이게 할 거야.”라는 협박을 듣는다. 노조에 가입하거나 문제를 제기한 사람이 ‘왕따’를 당하거나 다음 작업에서 배제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힘든 건 잘 알지만 이렇게 짝을 수밖에 없다.’, ‘예전엔 이것보다 더 심했다.’는 말로 합리화하는 내부의 분위기는 아직까지 당연하게 받아들여진다. 장기간 폐쇄적으로 작업이 진행되는 방송제작 현장의 특성상, 내부의 자생적 변화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3. 산재보상은 물론 방송사와 책임자 처벌이 어려운 방송노동 현장

지난 2월 4일 CJB 청주방송에서 근무한 이재학 PD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정규직 PD보다 더 강도 높은 업무량을 소화한 이씨는 인건비 증액, 인원보강 등 처우개선을 요구하다 2018년 4월 말에 해고당했다. 같은 해 9월 부당해고라며 근로자지위 확인소송을 냈고, 지난 1월 22일 1심에서 패소했다. 이재학PD의 억울함을 해소하고 진실을 밝히고자 마지막으로 기댄 법원조차 진실을 철저히 외면했다. 곧바로 항소장을 냈지만 ‘억울해 미치겠다.’는 유서를 남긴 채 떠났다.

이재학PD 사망 사고와 같은 불행한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곳이 바로 방송노동현장이다. 이재학PD는 CJB 청주방송에서 14년간 많은 방송 프로그램을 제작하며 PD로서 일해 왔다. 14년 동안 계약서 한 번 작성하지 않은 프리랜서로 일해 왔기 때문에 청주방송의 노동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간단히 해고당했다. 그는 정규직 직원보다 더 많은 일을 하며 청주방송에 열정을 다해 일해 왔는데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버려졌다. 소송을 통해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방송사는 거짓 증언과 사기로 그를 죽음으로 내몰았던 것이다.

이처럼 방송제작현장의 대다수 노동자는 비정규직으로 뼈를 갈아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지만 결국에는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한다. 근로기준법을 적용받기 어렵고, 산재사고가 나도 산재보상도 못 받을 뿐만 아니라 방송사와 책임자들을 처벌할 수가 없다.

방송 노동의 문제는 업계가 복잡하게 얽혀있고 모든 방송국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고질적인 병폐이기 때문에, 한 사람 혹은 한 방송국에게만 책임을 물을 수도 없다. 또한 그렇게 절차가 진행된다고 해서 재발방지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실질적 사용자인 방송국 대표는 어떠한 처벌도 할 수가 없다. 방송노동자에게 구체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근로기준법도 노동법도 산안법도 미비한 상황이다.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방송제작 현장에서 일어나는 노동인권 문제를 외면하고 방기하고 있는 방송국, 정부관련기관, 방송 업계 전반이 방조자이자 동조자이며, 더 나아가서는 공범들이다.

이재학 PD 사망 사고와 같은 방송 노동의 문제는 청주방송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나라 모든 방송사에서 매일매일 반복되고 있는 현실이다. 이한빛PD가 방송제작현장의 구조적인 문제를 제기하고 떠난 지 3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방송제작현장의 구조적인 문제는 근본적으로 달라지지 않아 이재학PD 사망 사고가 일어났고 앞으로도 계속될 수밖에 없다.

방송 노동현장의 구조적인 문제를 개선해야 방송 노동환경이 개선될 것이며, 방송제작현장에서 끊임없이 반복되는 산업안전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제정되어야 한다.

방송사에서 메인 PD가 방송제작의 모든 계획과 스케줄을 결정하고 진행하지만 수많은 하청 업체와 비정규직 스태프를 관리하기에 책임자로 처벌받을 수 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방송제작의 모든 권한은 방송국에 있기 때문에, 원청인 방송사가 책임을 져야 한다. 현재의 법에서는 방송 제작현장의 관리자인 PD나 촬영 감독, 조명팀 감독 등 도급업체의 핵심 스태프에게 모든 책임을 돌리고 있는 형편이다. 결과적으로 제도를 세밀하게 다듬지 않으면 진짜 원인은 놔두고 실무관리자만 처벌된 채, 재발방지 대책도 마련되지 않고 넘어가게 된다.

방송제작현장의 산업재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방송제작현장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송 노동 관련 법제도를 정비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방송사, 제작사, 원청, 하청 등 모든 도급업체는 물론 그 책임자, 정부관련기관 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해야 한다.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는 방송노동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특히 한빛센터는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과 함께 방송미디어산업의 산업안전가이드라인을 제정하기 위해 활동하고 있다. 또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에 적극 결합하여 노동자가 안전하고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 CJ ENM tvN <혼술남녀> 故 이한빛 PD 투쟁, 그리고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 이한빛 PD의 죽음

- 2016년 1월, 이한빛은 CJ ENM에 입사했다. 그는 같은 해 4월, CJ ENM을 대표하는 케이블 채널 tvN의 드라마 <혼술남녀> 조연출로 배속되었다. 그리고 2016년 10월 26일, 이한빛 PD는 세상을 떠났다.
- 그가 마지막으로 남긴 유서에는 <혼술남녀>의 조연출로 활동하면서 현장에서 경험한 너무나도 열악한 방송 노동 환경에 대한 충격, CJ ENM의 지시를 받고 방송 노동자를 착취하는 업무를 수행하며 겪은 갈등에 대한 언급이 담겨 있었다.

“촬영장에서 스태프들이 농담 반 진담 반 건네는
'노동 착취'라는 단어가 가슴을 후벼 팠어요.
물론 나도 노동자에 불과하지만,
적어도 그네들 앞에선 노동자를
쥐어짜는 관리자 이상도 이하도 아니니까요.

하루에 20시간 넘는 노동을 부과하고
두세 시간 재운 뒤 다시 현장으로 노동자를 불러내고
우리가 원하는 결과물을 만들기 위해
이미 지쳐있는 노동자들을 독촉하고 등떠밀고
제가 가장 경멸했던 삶이기에 더 이어가긴 어려웠어요.”

- 故 이한빛 PD의 유서 중

○ 故 이한빛 PD의 죽음 이후, 진상 규명을 위한 과정

- 2016년 11월 9일, 청년유니온, 민변 등 17개 시민사회단체가 모여 'tvN <혼술남녀> 신입 조연출 사망사건 대책위원회'가 구성되었다.
- 이후 2017년 4월까지 진상조사를 진행하며, 상암 CJ ENM 본사 앞에서 CJ ENM을 규탄하고 방송 노동 환경 개선을 촉구하는 촛불 문화제를 이어나갔다.
- 2017년 4월 17일, 대책위의 사망 조사 결과가 발표되었다. <혼술남녀> 촬영 현장의 열악한 노동 환경과 이한빛 PD에게 부여된 과중한 업무, 그리고 이한빛 PD가 회사로부터 온갖 갑질과 폭언에 시달렸다는 사실이 세상에 드러났다.
- 2017년 6월 14일, CJ ENM은 이한빛 PD의 유가족과 대책위에 공식으로 사과했다. 이한빛 PD의 죽음에 대한 자신들의 책임을 인정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약속했다.



○ 이한빛 PD의 유지를 이어 생긴,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 2018년 1월, 이한빛 PD의 유가족과 전국언론노동조합 등이 협력하여 이한빛 PD의 의지를 계승하여 방송 노동 환경을 개선하고 방송 노동 인권을 증진하기 위한 단체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가 창립하였다.
-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는 크게 다음과 같은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 1) 미디어신문고 운영 : 노동인권 침해나 각종 고충을 비롯해 방송 노동자들의 민원 사항을 제보받고 적절한 대응을 모색한다.
- 2) 방송 노동자 결집 : 직군, 촬영장, 활동 장르 등에 따라 여러 갈래로 분산되어 있는 방송 노동자들이 단결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현장 노동자 오픈테이블’이나 ‘방송 촬영 현장 커피차 캠페인’ 등의 활동을 펼치고 있다.
- 3) 사각지대 문제 발굴 :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연기자, 아이돌 등)의 노동인권, 방송 촬영 현장의 노동 안전 문제, 여성 방송 노동자의 인권 문제 등 열악한 방송 노동 환경 속에서 더욱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노동자나 노동 의제를 발굴하고 문제를 꾸준히 제기한다.
- 4) 정책 개발 : 방송 노동 안전 문제와 연계한 ‘방송 산업안전가이드라인’ 연구,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문제와 연계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연구 등 방송 노동 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연구/개발하고 있다.



- 5) 교육 프로그램 : 점심 시간마다 정기적으로 진행되는 ‘런치노동법’ 프로그램

을 비롯하여, 방송 노동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알고 당당하게 이를 주장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꾸준히 진행 중이다.

6) **휴서울미디어노동자쉼터 운영** : 서울노동권익센터와 협력하여, 방송사나 제작사가 밀집한 서울시 마포구 상암동의 'DMC산학협력연구센터'에 휴서울미디어노동자쉼터를 2018년 5월부터 운영하고 있다. 제대로 쉬거나 마음 편히 작업할 공간이 없는 방송 노동자를 위한 휴식 공간이자, 방송 노동자들이 주체가 되어 다양한 활동을 펼칠 수 있는 공간으로 절찬리에 활용 중이다.

7) **방송 노동 인식 개선을 위한 온/오프라인 캠페인** : 방송 노동자를 비롯해 시민들에게도 방송 노동의 현실을 알리는 콘텐츠 개발 (웹툰, 카드뉴스, 유튜브, 텔레그램 스티커 등), 2019년 6월에 출간된 <가장 보통의 드라마>를 비롯한 출판 작업, 드라마 촬영 현장을 찾아가 한빛센터와 방송 노동 인권의 중요성을 알리는 '커피차 캠페인', 이외 지속적인 토론회, 포럼 등을 개최하거나 시기에 맞춘 정기적인 캠페인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다.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게 함께 목소리를 내주시시오.

김미숙 / 태안화력 비정규직청년노동자 고 김용균 어머니

아들 용균이는 공공기관인 석탄화력 서부발전소 하청에서 일하다가 부당한 사고를 당했습니다. 사고 당시 정신없이 달려간 태안의료원 병원 로비에서 우리를 맞이한 하청 이사가 죄송하다 한마디 한 후에 했던 말들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아들은 착하고 성실했지만, 고집이 있어서 가지 말아야 할 곳을 자기 맘대로 갔다. 가서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해서 사고가 났다. 보험 들어놓은 것 있으니 해결해주겠다.”

정신을 가다듬고 생각해보니, 아들의 평소에 성품으로 보아 시키지도 않은 일을 할 아이가 아닐 거라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사측 몰래 아들 동료들에게 물어보니 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사측이 진실을 감추고 아들의 잘못으로 몰고 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억울한 죽음을 밝혀서 아들의 원한을 풀어주고 싶었습니다. 부모로서 아들에게 마지막으로 해줄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들은 10호기를 담당하고 있었는데 최신 시설이라고 했습니다. 1.2 km나 되는 긴 거리를 홀로 담당하였고, 밤낮으로 혼자 다니며 이상 점검과 낙탄 처리를 했습니다. 어두컴컴한 현장을 헤드랜턴도 지급 받지 못한 채 개인 휴대폰 불빛에 의지하며 일했습니다. 2인 1조가 규정이었지만 오래 근무한 동료들에 따르면 한 번도 지켜진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저는 아들이 왜 죽을 수밖에 없었는지 제대로 알고 싶었고, 사고 삼일째 되던 날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아직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아파트 15층 높이의 건물이 한 대의 기계라고 했습니다. 1층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내부 전체에

탄가루 분진이 눈처럼 쌓여있었고, 어두컴컴해서 음산한 기운이 가득했습니다. 거대한 철체 안에 있는 컨베이어벨트는 중간쯤에 놓여있었고, 수많은 회전체가 안전 커버도 없이 위태롭게 노출된 채 벨트를 잡아주고 있었습니다. 누구라도 조금이라도 실수한다면 위력도 세고 빠르게 돌아가는 컨베이어벨트에 팔려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컨베이어벨트는 무엇이든 집어삼킬 것 같은 무시무시한 살인병기 같았습니다. 70년대 산업현장에서나 있을법한 곳, 전쟁터 같고 아수라장 같은 곳이 바로 제 아들이 일하는 곳이었습니다. 당연히 있어야할 화장실도 없었고, 물 한 모금 먹을 식수대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양 옆으로 길게 늘어서있는 철체, 수십 개의 구멍이 뚫려있는 개구부라는 곳을 밤낮으로 점검하며 낙탄을 처리했을 아들을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아프고 목이 메여 옵니다.

사고은폐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맨 꼭대기 사고 난 현장을 갔을 때, 벌써 사고 흔적을 찾아볼 수 없도록 물청소가 되어 있었습니다. 안전줄이라고 불리는 풀 코드는 평소에는 축 늘어져 있어 당겨도 잘 작동되지 않았다고 했는데, 그 날은 타이트하게 당겨져 있었습니다. 어떻게든 아들의 억울한 죽음을 밝히고 싶었던 저는 처참하게 죽어간 아들이 생각나고 분해서 그 자리에서 악을 쓰며 짐승처럼 울었습니다.

여러 시민사회단체와 시민들의 도움으로 62일 투쟁 끝에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진상조사에 우리 측 사람들도 포함되어 특조위가 구성되었습니다. 아들은 업무수칙을 다 지켜서 죽을 수밖에 없었다고 조사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조사 내용을 듣는 내내 기가 막히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원청은 하청을 주었으니 자신의 책임이 없다고 했고, 하청은 내 사업장이 아니라 기계에 대한 권한이 없어서 어쩔 수 없었다고 합니다.

모두가 책임을 회피하지만, 법적으로 기업에 대한 아무런 제재도 없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아들처럼 억울하게 죽어갔지만, 대부분 사고 당사자의 실수로 치부되어 왔다는 점에 분노를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이 나라에서 행해지고 있다는 사실에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특조위가 지적인 내용들이 현장에서 이행되기를 기대하며 지금까지 지켜봐

왔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해결의지를 보이지 않았고, 지금까지 아무것도 실현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에 저는 분노합니다. 기업에게 어떤 제재를 가하려고 하면, ‘기업하기 힘들다’는 등 ‘이러다 나라 망한다’는 등 이상한 말로 국민들을 현혹시키기에 급급합니다.

거의 모든 산재사고는 기업이 안전을 방치하고 책임지지 않는 구조적 모순 때문에 일어납니다. 기업이 노동자들의 안전을 배려하고 조금만 투자를 하면 많은 산업재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기업이 망하는 것을 바라는 게 아닙니다. 열심히 일하는 노동자가 생명만큼은 안전하게 지킬 수 있도록 기업 스스로가 안전을 책임지도록 법적 안전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 전 우리 측이 고소 고발한 서부발전과 하청업체인 한국발전기술의 경찰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고위 관리자들이 처벌받기를 바랐지만 하청말단 직원만 처벌한다고 했고, 검찰로 송치되었다고 합니다. 납득할 수 없습니다. 기업은 늘 법망에서 빠져나가며 법을 비웃고 있습니다. 이를 바로잡아야 할 법과 정치는 술에 물탄 듯 물에 술탄 듯 기업 눈치 보기에만 급급해 보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소중하지 않은 생명이 없습니다.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것이 국가의 가장 중요한 의무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수십 년째 OECD 국가 중 산업재해 1위 국가입니다. 어떤 정부가 들어서도 바뀌지 않고 있다는 게 참혹한 지금의 현실입니다.

2007년 영국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한 바 있습니다. 기업이 안전을 방치해서 사망에 이르게 할 때는 매출액의 10%까지 벌금을 물게함으로써 산업재해를 현저하게 낮출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런 법이 필요합니다. 노동자를 죽게 한 기업이 강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도입해서 더 이상 억울한 죽음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국민들께 호소합니다. 함께 목소리를 내주십시오. 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그래서 내 가족 내 이웃의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게 나서주길 간절하게 호소드립니다.

■ 故 김용균님 약력

1994. 12. 06. 경상북도 구미시에서 외동아들로 출생
 2018. 09. 17. 한국발전기술 입사. 서부발전 태안화력본부 트랜스퍼타워에 배치
 2018. 11. 28. “문재인대통령, 비정규직 노동자와 만남시다” 피켓팅 참여
 2018. 12. 10. 혼자 작업 중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사망
 2018. 12. 11. 03:23 컨베이어벨트(CV-09E Tail Turn-Over 구간)에서 발견

스물 네 살 청년 故 김용균은 빛을 만드는 노동자였습니다. 그는 한국발전기술 하청업체에 입사해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로 일했습니다.

고인은 전기를 만들고 안전하게 공급하는 일을 했습니다. 위력이 세고 속도가 빠른 컨베이어벨트를 운전했고, 시설물을 순찰하며 컨베이어벨트에서 떨어진 석탄(낙탄)을 치웠습니다. 탄가루 이물질을 씻어 내리는 배수관이 막히지 않았는지 살피며, 석탄을 싣고 움직이는 운반용 벨트 부품을 점검했습니다. 원청사인 한국서부발전의 업무 지시를 받았으며, 시설에 이상이 보이면 회사에 보고했습니다. 핸드폰 후레쉬에 의지해 작업을 해야 했고 혼자 일을 해야 했습니다.

고인은 4조2교대로 밤낮 일했으며, 2018년 기준 최저임금보다 8만 원 더 많은 임금을 기본급으로 받았고 책정된 임금의 절반은 하청업체가 수익으로 가져갔습니다.

■ 故 김용균 노동자 투쟁 “62일을 이은 기록”

▶ 2018.12.11.

김용균은 10일 밤 야간작업에 투입됐다. 11일 새벽 3시경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숨진 채 발견됐다. 이날 오후,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문재인 대통령, 비정규직 노동자와 만남시다”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는 김용균을 떠올리며 울었다. 그는 “더이상 동료의 죽음을 보고 싶지 않습니다. 저희도 하청 노동자이지만 국민입니다. 제발 더이상 죽지 않게 해주십시오”라고 절규했다.

▶ 2018.12.12.

김용균의 어머니가 아들이 일하던 곳에 직접 방문했다. 그는 아들이 일했던 곳을 보고, “70년대 탄광같은 곳이었다. 아직도 이런 곳이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다. 아직도 일하고 있는 다른 아이들에게 빨리 이곳에서 나오라고 했다”고 말했다.

‘청년비정규직 노동자 고 김용균 시민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첫 회의를 열었다. 대책위에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등 노동조합뿐만 아니라 100여 개 시민사회 단체가 참여했다.

▶ 2018.12.17.

김용균의 유가족과 시민대책위가 청와대 앞에서 첫 기자회견을 열었다. 유가족은 태안화력 발전소 1-8호기 작업중단을 긴급 요구했다. 시민대책위는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비정규직 정규직화 등 5대 기본입장과 향후 투쟁 계획을 발표했다.

▶ 2018.12.22.

서울 파이낸스센터 앞에서 1차 범국민추모제가 열렸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전날인 21일부터 시민들과 도심을 행진하고, 청와대 앞에서 밤을 지새웠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내가 김용균이다”라며, 대통령과의 만남을 촉구했다.

▶ 2018.12.20. ~ 12.28.

1년 내내 잠자고 있던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 국회 논의가 본격화됐다. 유가족은 국회를 지키며 ‘더이상 노동자들이 죽지 않게 해달라’고 했다. 산안법 전면개정을 촉구하는 국회 앞 필리버스터, 민주노총 결의대회 등 투쟁이 이어졌다. 다른 산재피해 유가족들도 기자회견에 참석해 산안법 전면개정을 요구했다. 27일, 28년 만에 산안법이 전면 개정됐다. 28일, 시민대책위는 기자회견을 통해 산안법 개정의 문제를 이야기했다. 산안법개정 이후에도 김용균은 하청노동자라며 투쟁을 이어가겠다고 했다.

▶ 2019.01.03.

노동부 보령지청이 김용균이 일하던 태안화력 9, 10호기 재가동을 시도했다. 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지청 항의방문, 농성 등으로 이를 저지했다. 4일

오전, 보령지청은 9, 10호기 재가동 불가 입장을 밝혔다.

▶ 2019.01.09.

KTX 강릉선 탈선, KT 아현지사 화재, 김용균의 죽음의 공통점은 민영화가 부른 참사라는 점이다.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정규직,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민영화 중단, 근본 방안 마련 등을 촉구했다.

▶ 2019.01.11.

김용균 시민대책위가 정부에 두 가지 요구를 전달했다. 진상규명과 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 직접고용이다. 대책위는 19일까지 정부 답변을 요구했다.

▶ 2019.01.12.

광화문 광장에서 4차 범국민추모제와 동시에 전국 10개 지역에서 김용균 추모 촛불을 밝혔다. 김용균의 동료 200여 명은 청와대 앞에서 발전 비정규직 노동자 결의대회를 열고 광화문 광장까지 행진했다.

▶ 2019.01.15.

시민대책위가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 사회적 타살 진상규명 위원회 역할과 과제>를 주제로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를 통해 구조적 문제를 밝힐 수 있는 진상규명위원회 구성이 왜 필요한지 짚었다. 노동부가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 특별안전보건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 1,029건 적발, 과태료 6억7천 여만 원, 사용중지 컨베이어 8대 등이다.

▶ 2019.01.18.

정부가 김용균의 죽음에 대해 한 장짜리 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시민대책위는 위험의 외주화를 막는 정규직 전환 대책은 전무하고, 진상규명 재발방지 대책이 없는 ‘면피책’이라고 규탄했다. 1천인의 비정규직 노동자, 구의역 김군과 김용균의 동료들이 구의역에서부터 청와대까지 걸었다.

▶ 2019.01.19.

민주노총이 김용균 투쟁 승리를 위한 전국노동자대회를 열었다. 이어진 5차 범국민 추모제에는 1만여 명의 노동자, 시민이 참여했다.

▶ 2019.01.22.

유가족과 시민대책위는 김용균의 시신과 함께 빈소를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으로 옮겼다.

“설 전에 장례를 치를 수 있게 문재인 대통령이 결단하라”는 절박함이었다. 이날부터 시민대책위 대표단 6인이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 2019.01.24.

인권실태 조사단이 <태안화력 발전소 비정규직 인권실태 보고회>를 열었다. 인권활동가들로 구성된 태안인권실태조사단은 12월 27일-28일 현장노동자 40여 명을 인터뷰했다.

▶ 2019.01.27.

김용균이 죽은지 49일 되는 날, 광화문광장에서 6차 범국민 추모제를 열었다. 이날 어머니는 제상의 딸기를 보며, 딸기를 좋아하던 아들을 떠올렸다.

▶ 2019.01.30.

설 연휴를 앞둔 30일, 민주노총 결의대회가 열렸다. 이날 3만여 명의 서명지를 청와대에 전달했다.

▶ 2019.01.31.

김용균 노동자의 죽음 문제해결을 촉구하는 삼보일배가 이어졌다. 사회원로와 조계종 스님들이 함께했다.

▶ 2019.02.05.

정부·여당이 김용균 죽음에 대한 대책을 발표했다. 구조적 원인까지 밝힐 수 있는 진상규명 위원회를 구성하고, 정규직 전환을 포함한 개선방안을 포함키로 했다. 이에 따라 시민대책위는 9일 장례를 치른다고 밝혔다. 김용균이 죽은지 58일만이었다.

▶ 2019.02.09.

김용균이 죽은 지 62일 만에 그의 장례를 치렀다. 그는 마석모란공원 전태일 열사 근처에 묻혔다.

▶ 2019.04.24.

고 김용균 시민대책위 6차 대표자회의를 통해 위험의 외주화를 통해 많은 노동자들이 다치고 죽는 현실을 바꾸기 위해 (가칭)사단법인 김용균재단준비위원회 구성을 결정했다.

▶ 2019.05 ~ 06.

사단법인 김용균재단 준비위원회 회의와 준비위원회 실무소위 회의를 진행하며 사단법인 설립에 대한 검토 논의 시작했다.

▶ 2019.07. ~ 08.

사단법인 김용균재단 출범을 위한 간담회 제안서를 만들고 노동조합, 시민단체, 종교단체 등에 배포하고 간담회를 진행했다. 산재사고 대응을 위해 사고현장 방문과 유족들을 만났다.

▶ 2019.08.10.

김용균재단(준)은 노래극팀과 함께 고 김용균의 이야기를 통해 많은 노동자들의 죽음을 추모하면서 현실을 보여준 낭독노래극 '기다림' 공연을 2회 진행했다. 기다림 공연은 이후 1주기 추모제, 지역행사에서도 선보였다.

▶ 2019.08.19.

김용균 특조위는 진상조사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통해 발전사 민영화와 외주화가 김용균죽음의 원인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22개의 권고안과 이행점검을 위한 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 2019.08.20. ~ 8.31.

김용균특조위 발표 이후 발전비정규직 노동자들은 투쟁을 선포하고, 현장간담회를 진행했고 김용균재단(준)도 함께했다. 발전비정규직들은 결의대회를 통해 특조위 권고이행을 정부에 요구했다.

▶ 2019.09.24.

김용균재단(준)은 62일간의 투쟁을 담은 '김용균이라는 빛' 북 콘서트를 진행했다. 비극의 시작이 된 발전소 민영화부터 김용균의 죽음, 투쟁과정, 용균이

와 투쟁에 대한 기억과 목소리 그리고 특조위 발표 이후 김용균재단의 설립까지를 담은 콘서트였다. 이후 지역별로도 복콘서트가 진행되었다.

▶ 2019.10.26.

죽지 않고 일할 권리가 없는 사회에서 빛이 된 김용균의 죽음을 담아 ‘비정규직 없는 세상, 노동자가 건강하게 일하는 세상’을 위해 활동할 “사단법인 김용균재단”이 출범했다.

▶ 2019.11.13.

전태일에서 김용균으로! 죽지않고 일할 수 있게, 차별받지 않게! 평등한 노동 세상을 위해 김용균재단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함께 촛불 행진을 진행했다.

▶ 2019.12.02. ~ 12.10.

위험의 외주화 약속은 지켜지지 않고 김용균법이라는 산안법은 제대로 개정되지 못했고, 특조위 권고안은 이행되지 않는 현실을 제기하며 “일하다 죽지 않게! 차별받지 않게!” 고 김용균 노동자 1주기 추모주간을 진행했다. 추모주간 내내 광화문에는 농성장과 분향소가 설치되었다. 발전비정규직들의 농성은 1주기 추모주간을 지나서도 이어졌다.

▶ 2019.12.12.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서산출장소에서 사건처리결과 회신이 왔다. 유족과 시민대책위가 한국발전기술(주)과 한국서부발전(주)을 상대로 검찰과 노동지청에 제기한 고소고발사건에 대해 한국서부발전 사장과 한국발전기술 사장 등은 불기소 의견(혐의없음)으로, 중대재해에 대해서는 한국서부발전(주), 한국발전기술(주), 한국서부발전 태안발전본부장, 한국발전기술 태안사업소장은 일부 기소의견으로 대전지검으로 송치되었다.

▶ 2020.01 ~

김용균재단은 출범 이후 문중원기수 투쟁, 비정규 노동자들과 연대, 위험의외주화금지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을 위한 활동, 산재피해가족네트워크 참여, 코로나19에 가장 위협을 당하는 비정규직 목소리내기, CJB청주방송 방송사비정규직 투쟁, 김용균법의 의미와 문제점에 대한 제기, 산재사고현장 방문과 유가족지원 활동, 산재피해가족을 위한 매뉴얼작업 등을 진행하고 있다. 추가로

4월 14일, 대전지검에 고 김용균노동자의 죽음에 대해 원하청 대표가 처벌받는 것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추가의견서를 제출했고, 아직 조사가 진행 중이다.

■ 김용균 재단 소개



CMS (자동출금) 후원·부정기 후원

아래 링크를 통해 양식을 작성해주세요

*부정기 후원의 경우 입금 후 메일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 btly/김용균재단

후원계좌

기업은행 02-833-1210-0 사단법인 김용균재단

사단법인 김용균재단은
여러분의 후원으로
비정규직 없는 세상,
노동자가 건강하게 일하는 세상을
일구기 위한 활동을 합니다.



주소 | 서울시 영등포구 대림로 183(영등포4동) 4층

전화번호 | 02-833-1210

이메일 | yongkyun2019@gmail.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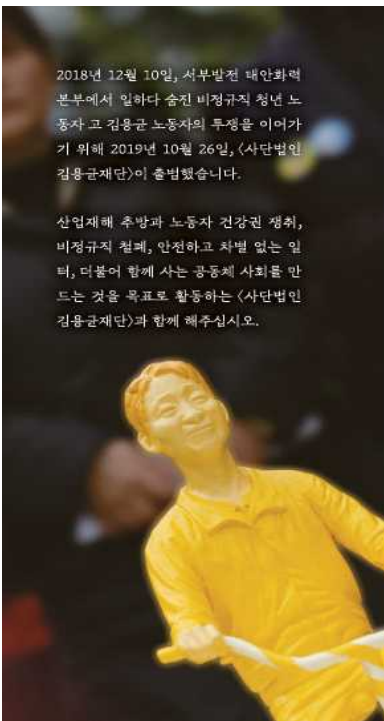
홈페이지 | yongkyun.nodong.org

페이스북 | 사단법인 김용균재단

노동자가 일구는

건강하게 일하는 세상

비정규직 없는 세상



2018년 12월 10일, 서부발전 대안화력 본부에서 일하다 숨진 비정규직 청년 노동자 고 김용균 노동자의 투쟁을 이어가기 위해 2019년 10월 26일, <사단법인 김용균재단>이 출범했습니다.

산업재해 추방과 노동자 건강권 쟁취, 비정규직 철폐, 안전하고 차별 없는 일터, 더불어 함께 사는 공동체 사회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활동하는 <사단법인 김용균재단>과 함께 해주십시오.

김용균재단이
이러는 일

**차별 없는 일터,
더불어 사는
공동체 사회**

**비정규직
철폐활동**

비정규직 철폐로 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하는 일터를 만드는 활동을 지원하고 함께 하겠습니다.

**청년노동자
권리보장사업**

청년 노동자가 스스로 조직되어, 권리를 지켜나갈 수 있도록 돕고 함께 하겠습니다.

**넓고 두터운
연대활동**

차별없이 일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활동하는 국내외 시민 노동단체, 문화단체, 인권단체, 노동안전보건 단체와 연대하며 함께 하겠습니다.

김용균재단이
이러는 일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고 김용균노동자
추모사업**

고 김용균 노동자와 수많은 김용균들의 삶을 기억하고 그들의 죽음의 원인을 밝혀내고 추적하는 활동을 하겠습니다.

**위험의 외주화
금지투쟁**

비정규직, 청년, 이주, 장애인, 여성, 미조직노동자 등 더 약자인 노동자에게 위험이 전가되는 현실을 바꾸기 위해 활동하겠습니다.

**산재피해자 못
유가족 지원활동**

산재피해자와 피해가족이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와 사회를 만드는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함께 하겠습니다.

구의역 참사 4주기, 다시는 제2의 김군이 없기를 바라며...

임선재 /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 PSD지회장

2016.5.28. PM 05:57

오후 4시 58분, 구의역 9-4스크린도어에 장애가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김군이 구의역에 도착한 시간은 오후 5시 52분. 당시 서울메트로와 은성PSD사이에 맺었던 계약(고장접수 1시간 이내 현장출동 하지 않을 경우, 페널티 부과)에 6분 남겨둔 상황이었습니니다.

다른 직원들은 다른 곳의 장애로 도저히 같이 올 수 없어 페널티를 피하기 위해 김군 혼자 구의역에 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나마도 구의역 조치를 위해 김군에게 주어진 시간은 단 10분. 오후 6시 20분까지 다시 을지로4가역의 장애조치를 위해 이동해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김군은 스크린도어 뒤편에서 혼자 수리를 진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후 5시 57분. 달려오던 열차와 스크린도어 사이에 끼어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열악한 노동환경, 반복된 죽음

김군이 사망한 이후 가장 먼저 주목받은 것은 당시 가방에 들어있던 컵라면이었습니다. “차라리 컵라면이라도 배불리 먹고 가지”라며 울부짖으시던 김군의 어머니의 모습이 아직도 잊히지 않습니다.

최저임금 수준의 월급에 허덕이며 투잡을 뛰어야 했고, 사람은 늘 모자라 2인 1조는 꿈도 꿀 수 없었습니다. 한 시간 내에 조치하지 못하면 페널티를 물어야 하기 때문에 늘 시간에 쫓겨야 했습니다. 그렇게 밥 먹을 시간조차 없어서 가방에 컵라면 넣어 다니며 일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목숨 내놓고

일해도 다음 달 계약 만료니 ‘이제 그만 나오라’라는 이야기를 언제 들을지 몰라 회사에 싫은 소리 한번 낼 수 없었던 게 김군과 동료들의 현실이었습니다.

김군의 죽음이 예견되었던 이유, 그리고 이미 똑같은 죽음이 두 차례나 있었지만, 또다시 반복되었던 이유는 바로 ‘외주 하청업체 비정규직’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김군의 부주의 탓? 시민의 힘으로 밝힌 구조적 문제

당시 서울메트로는 ‘개인 과실’이라며 김군에게 책임을 전가했습니다. 이미 성수역과 강남역에서 스크린도어를 수리하던 노동자가 사망했을 때에도 그리했던 전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민들이 가만있지 않았습니다. 김군이 사망한 구의역 9-4 승강장을 중심으로 추모행동을 벌이며 김군의 죽음이 개인의 잘못이 아닌, 정규직이 아닌 외주 하청의 구조적인 문제, 안전보다 이윤을 우선시하는 사회의 책임이라는 점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서울시와 서울메트로는 본인들의 잘못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후 ‘구의역 진상조사단 시민대책위’가 꾸려지고, 김군의 동료들이 직영전환을 거쳐 정규직전환에 이르게 되는 등 근본적인 변화를 위한 노력들이 진행되었습니다.

구의역 4주기, 변한 것과 변하지 않은 것

사고 이후 김군의 동료들은 재발 방지를 위해 안전업무의 정규직화를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무기 계약직 직고용을 거쳐 지난 2018년 결국 정규직 전환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이와 함께 많은 것이 변했습니다. 비용절감이라는 이유로 2인 1조가 불가능한 인력부족의 현실, 밥 먹을 시간도 없이 바빠 움직여야 했던 근무강도, 죽음을 무릅써야 했던 열차 운행 중 선로측 작업 제도, 사고를 조장하는 각종 설비

등 사고의 원인으로 가장 많이 지적되었던 점들이 개선되었고, 좀 더 안전한 현장이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장애처리보다 직원의 안전이 우선인 문화’가 만들어질 수 있었습니다. 노동자들에게는 작업을 하던 도중 위험하겠다는 생각이 든다면, “주간에는 위험해서 못하겠으니 영업 종료 후 조치하겠다”라며 작업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진 것입니다. 이런 권리 덕에 ‘위험하면 하지 마’라는 분위기가 현장에 자리 잡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론 구의역 사고가 4년이 지났지만, 사회는 여전히 교훈을 찾기는커녕 변한 게 하나 없다는 생각도 듭니다. 4년 전 “열심히 일했을 뿐인 내 아들이 무슨 죄냐”,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게 해 달라”고 김군의 어머니가 절규하셨던 그 외침을 김용균님의 어머니께서 똑같이 외치고 계신 현실을 2018년 겨울 내내 지켜봐야 했습니다.

“누군가의 담뱃불이나 용접 작업 때문이 아니다”라며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외치는 한익스프레스 산재사고 유족들, 김용균님과 너무도 흡사한 죽음을 맞이한 삼표 시멘트의 비정규직 노동자....., 여전히 대한민국 사회는 곳곳이 구의역입니다.

다시는 제2의 김군이 없기를 바라며...

2013년 성수역과 2015년 강남역 사고 당시 서울메트로는 그 책임을 하청업체와 해당 노동자의 과실로 떠넘기고 빠져나갔습니다. 그 결과가 세 번째 사고와 김군의 죽음이었습니다.

아무리 환경이 열악해도 안전 대책을 마련할 비용보다 벌금이 싸게 먹히고, 노동자의 목숨보다 솜방망이 처벌이 가벼운 한, 김군과 같은 죽음은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꼬리 자르기 식으로 처벌하는 현실이 바뀌지 않는 한 구의역과 같은 참사는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생명과 안전이 이윤보다 우선시 되는 사회, 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세상이 무엇보다 먼저 실현되어야 합니다. 그 출발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제정입니다.

‘노동자가 일하다 다치면 사장이 형사 처벌을 받는다’, ‘노동자가 사망하면 그 기업은 망한다’라는 정도의 제제가 있어야 사고를 필연적으로 유발하는 현 구조의 문제를 바꿀 수 있습니다.

늦어도 너무 늦었습니다. 21대 국회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반드시 입법되기를 바랍니다. 구의역 4주기를 맞아 더 이상 김군과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는 사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2의 김군이 없는 세상을 위해 김군의 동료들도 함께 하겠습니다.

2부 늦어도 너무 늦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사회

김혜진 (생명안전 시민넷 공동대표)

발제

- 삼성중공업 판결을 통해 본 기업처벌의 한계와 기업처벌법의 필요성
: 김동현 변호사(삼성중공업 크레인사고 피해노동자 지원단, 희망을만드는법)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소개 및 주요 판례로 본 기업처벌법의 의의
: 오민애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삼성중공업 판결을 통해 본 기업처벌의 한계와 기업처벌법의 필요성

김동현 변호사 /삼성중공업 크레인사고 피해노동자 지원단¹⁾, 희망을만드는법

1. 들어가며

삼성중공업 조선소에서 2017. 5. 1. 크레인 충돌로 인한 사고가 발생한 지 햇수로 4년이 지나고 있다. 하지만 진상 규명, 피해 회복 및 책임자 처벌은 아직도 진행 중에 있는 상황이다. 최근 이 사고에 대한 형법상 책임과 관계된 항소심 판결(창원지방법원 2019노941판결)이 선고된 바 있다. 이하에서는 이 판결을 중심으로 중대재해에서 현행법의 적용상 시사점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의의를 검토하기로 한다.

2. 삼성중공업 크레인 충돌 사건의 개요

(1) 마틴 링게 모듈

마틴 링게 플랫폼은 노르웨이 부근 북해에 고정식으로 설치하는 원유시설의 일부 설비로 심해지층에 고정시켜 가스나 원유를 개발·생산하는 설비이다.

1) 노동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삼성중공업 크레인사고 피해노동자 지원단(이하 “피해자 지원단”)을 구성하여 조직하여 피해노동자들을 조력하고 사법적(민·형사) 및 준사법적 구제절차에 대한 대응을 하고 있다.



[그림] 마틴 링게 플랫폼 사진

마틴 링게 모듈은 마틴 링게 플랫폼의 상부구조물이고, 마틴 링게 모듈을 발주한 마틴 링게 프로젝트는 다국적기업들의 컨소시엄이다. 총 계약금액은 9,439 억원, 공사규모는 발주시 19,520톤이었다가 2017. 5. 1. 사고 당시에는 23,330톤으로 수정되었고, 공사기간은 38개월에서 52.5개월로 연장되어 사고 시점 당시 2017. 6. 13. 인도를 목표로 공사 중에 있었다. 2)3) 마틴 링게 모듈을 수주한 컨소시엄은 삼성중공업과 Technip이다. 이 수주 컨소시엄의 대표업체는 Technip으로 엔지니어링, 조달 등의 역할을 담당하였고, 삼성중공업은 위 모듈의 시공을 담당했다.4)5) 삼성중공업 본 모듈을 거제 조선소 사업장 내 제7안벽에서 시공을 하였고, 일부는 도급이 이루어졌다. 본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크레인 충돌의 경우 골리앗크레인은 삼성중공업이, 지브크레인은 삼성중공업의 사내하청기업인 대흥기업의 각 소유로 작업이 혼재되어 진행되었다.

(2) 크레인들의 혼재 작업

가) 설계의 변경과 모듈 높이의 증가

2) 모듈 제작의 발주 및 사고 당시에는 Total Norge AS, Petoro, Equinor(구 Statoil)이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있었으나, 이후 사고 이후인 Total Norge AS는 위 프로젝트의 지분을 전량 Equinor(구 Statoil)에 매도하여 현재 운영사는 Equinor이다.

3) <https://www.offshoreenergytoday.com/statoil-completes-1-45b-takeover-of-totals-martin-linge-garantiana-asse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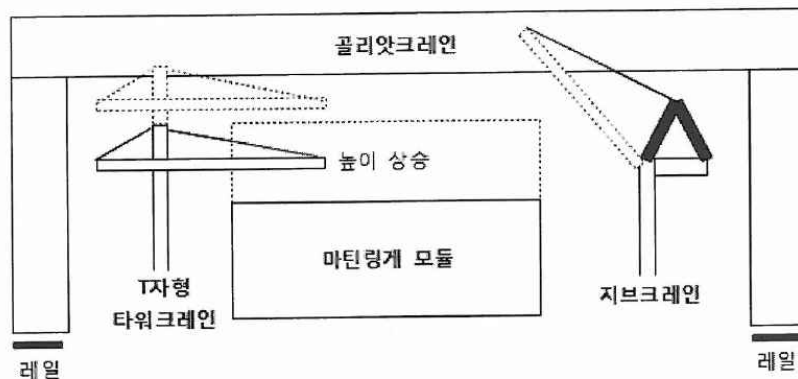
4) <https://www.offshoreenergytoday.com/technip-samsung-to-supply-topsides-for-marting-linge-platform-norway/>

5) <https://www.2b1stconsulting.com/total-awarded-main-packages-on-martin-linge-in-norway/>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마틴 링게 모듈의 공사 규모가 약 20%가 커지는 설계의 변경이 있으면서 전체 모듈의 구조가 변경되고 높이가 높아지는 등에 따른 시공방법 변경이 필요하였다.

나) 시공방법의 변경

사고시점의 작업방식인 골리앗크레인-지브크레인의 중첩된 시공 이전에는 T자형 타워크레인(골리앗크레인)과 골리앗크레인이 사용되고 있었다. 하지만 설계의 변경 및 공정의 진행 경과에 따라 모듈의 높이가 높아지게 되면서, 이 모듈의 상부 작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된 T자형 타워크레인의 높이를 높이게 되면 T자형 타워크레인과 골리앗크레인 간의 간섭이 발생하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그림] 골리앗-T자형 타워크레인-지브크레인 크레인의 비교(경남거제경찰서 의견서 11면)

위 그림과 같이 모듈 상부의 공사를 지원하기 위해 배치되는 T자형 타워크레인의 높이는 모듈의 높이보다 높되, 골리앗크레인의 거더 하부의 높이보다는 낮아야 한다. 그런데 본 사건의 경우에는 골리앗크레인의 간섭 때문에 T자형 타워크레인을 사용하는 방법은 불가능하였다.

이에 현장에서는 기존 작업방식과는 다른 방식이 요구되었고,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담당자들이 5-7차례의 회의를 하였고, 2016. 5. 13. 회의에서 지브크레인을 투입하는 결정을 하였다. 그리고 2016. 6. 13. 제7안벽 작업장 현장에 지브크레인이 설치되어 본 사건 전까지 운영되었다.

골리앗크레인의 작업동선 내에 지브크레인을 설치하여 혼재작업을 하는 작업 방식은 매우 이례적인 것이었다. 당시 작업자 및 관리자들은 크레인 중첩으로 인한 사고의 위험을 인지하고 있었다.⁶⁾

(3) 사건 당일의 상황 및 피해 현황

삼성중공업 직영 및 하청 노동자들은 2017. 5. 1. 14:30경 현장반장의 작업 지시에 따라 제7안벽 남쪽 편에서 컨테이너 박스 이전설치작업을 마친 후 당 초 17:00 작업하기로 예정되어 있었던 엘리베이터 운반작업을 하기 위하여 남 쪽 방향에 있던 골리앗 크레인을 북쪽 방향으로 이동시키게 되었다. 당시 골리 앓 크레인 진행 경로에는 지브크레인이 메인지브를 세우고 고철오물통 하역작 업을 하고 있었고, 메인 지브를 내리지 않으면 골리앗 크레인의 거더부분과 지 브크레인의 메인지브가 충돌하는 상황이었다. 그런데 골리앗 크레인의 신호수 및 현장 반장은 무전기로 지브크레인의 메인 지브를 내리라고 연락을 하였을 뿐 지브크레인의 주신호수도 그 내용을 지브크레인 운전수에게 전달하지 못하 였고, 결국 골리앗크레인 과 지브크레인이 충돌하였다. 정부의 공식통계에 따르 면 이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는 6명의 사망과 25명의 상해이다.⁷⁾

3. 1심 및 항소심 법원의 판단

(1) 유형화

이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총 15명의 삼성중공업 및 대흥기업의 임직원을 형법 상 업무상과실치사상 또는 산업안전보건법위반으로, 사업주인 삼성중공업은 산 업안전보건법상 양벌규정에 따라 기소하였다.⁸⁾ 피고인들을 업무상 지위 및 본 사건에 관여한 형태를 기준으로 분류하면 아래와 같다.

6) 항소심 판결문 8면 이하에서 삼성중공업 및 대흥기업의 임직원들의 진술을 근거로 이들이 사고의 위 험을 인지하고 있었음을 인정하고 있다.

7) 정부의 정식 통계에 포함되지 않은 피해노동자들이 있다. 특히 사고 현장을 목격한 당시 천여명의 작 업 노동자들의 많은 수가 사고로 인한 트라우마를 겪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마산거제산재추방운동연 합, 『나, 조선소 노동자』, 코난북스, 2019 참조.

8) 이 외에 검찰은 삼성중공업 및 대흥기업의 임직원 일부에 대해서는 불기소(기소유예 또는 혐의없음)결 정을 하였다.

순번	유형	지위	죄명	비고
1	총돌에 직접적인 행위 관여	크레인 운전자, 신호수	업무상과실치사상	
2	제1유형에 대한 직상급 지휘감독	현장반장 등	업무상과실치사상	
3	상급 관리감독자	과장, 조선소장, 하청 기업 대표이사	(3-1) 업무상과실치사상	1,2심 판단 변경
			(3-2)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4	법인	사업주(삼성중공업)	산업안전보건법위반	(3-2)에 대한 양벌규정

(2) 1심 법원의 판단의 요지

제1심 법원은 골리앗크레인 및 지브크레인의 신호수, 운전자 및 직상급 현장 관리자의 업무상과실치사상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형 내지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였다(1유형, 2유형). 한편, 상급관리감독자의 경우(3유형)에는 업무상과실치사상에 대해서 모두 무죄를 선고하였고, 위 유형중 대표이사과 조선소장에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상 협의체운영의무위반(법 제29조 제1항), 안전보건점검의무위반(법 제29조 제4항)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하고, 안전조치 의무 및 산업재해예방조치의무위반(법 제29조)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였다. 이들에게는 벌금 300만원 내지 금고형의 집행유예형이 선고되었다. 마지막으로 삼성중공업(4유형)에 대해서는 위 유죄부분에 대한 양벌규정에 따라 벌금 300만원이 선고되었다.

(3) 항소심 법원의 판단의 요지

3유형을 제외한 1,2,4유형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제1심과 제2심 법원이 동일하다. 주목할 부분은 3유형인데, 항소심 법원은 3유형의 업무상과실치사상죄에 대해서는 무죄에서 유죄로 판단을 변경하였고,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의무, 산업재해예방조치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1심 법원의 무죄의 판단을 유지하였다. 이에 따라 이들에게 벌금형(700만원) 또는 금고형(6월 내지 1년 6월)의 집행유예형(1년 내지 2년)이 선고되었다.

(4) 판례가 변경된 부분의 의의

항소심 법원은 3유형의 업무상과실치사상죄에 대한 판단을 변경하면서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모두를 그 이유로 제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한 1심 법원(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고단940, 2018고단368 (병합))의 판단은 다음과 같다.

먼저 1심 법원은 삼성중공업의 골리앗 크레인 운영과 관련하여 6단계의 계층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전제 하에, "삼성중공업이 수직적·분야적으로 구분되어 있고, 통상 관리감독자는 자신의 바로 아래 단계에 위치한 인원에 대하여 지시·감독권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업무를 수행하게 되므로, 2단계 이상 아래에 위치한 인원에 대해서는 법령, 회사 규정, 관행 등으로 별도의 지휘 감독 의무가 부과되거나, 당해 관리감독자가 위험요소를 인식하고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일방적·추상적인 지시·감독권만 있을 뿐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를 구성하는 구체적·직접적 주의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라고 실시하면서 이 사고와 관련한 지휘·감독의 주의의무는 직상급관리자(2유형)에게만 인정된다고 판단하면서 조선소장 및 대표이사의 주의의무를 부정하였다.⁹⁾

또한 1심 법원은 크레인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이나 지침이 미비한 것이 업무상 과실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규정이나 지침이 미비한 것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업무상 과실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서로 충돌할 가능성이 상존하는 복수의 크레인을 운행하는 사업장이라면 통상 해당 규정이나 지침을 마련하는 것이 당시 조선업계의 수준이라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어야 한다." 라고 실시하면서 사고 당시의 일반적인 조선업계의 안전대책상 그러한 지침을 마련한다는 것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¹⁰⁾

그러나 항소심 법원에서는 위 두 부분에 대하여 1심 법원이 사실 오인 및 법리오해를 하였다고 판단하였다. 먼저 규정의 미비가 과실에 해당하는지와 관련하여서는, '조선업계의 안전대책'이 아니라 '조선업계에 종사하는 일반적 보통인의 합리적 객관적 주의의무'로 판단하고, 피고인 및 관련자들의 진술 등을 근거로 사전에 충돌에 대한 안전대책을 강구할 수 있었다는 점을 인정한다. 규정의 미비와 관련한 법리오해를 지적하는 항소심 판결의 해당 부분은 다음과 같다.

9)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고단940, 2018고단368(병합)판결서 21면 이하.

10) 전계 판결서, 13-14면.

“그러나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규정이나 지침을 마련하는 것이 조선업계의 수준’이라는 것이 아니라, 조선업계에 종사하는 일반적 보통인의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주의 정도에 비추어 크레인 충돌 및 그로 인한 사상의 결과 발생 위험을 예견할 수 있었는지 여부 및 그에 관한 안전대책을 마련한 경우 위험을 회피할 수 있었는지 여부이다. 위와 같은 위험에 대한 예견 가능성 및 회피가능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위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것은 주의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이렇게 보지 않는다면, 동종업계 종사자 모두가 위험을 예상할 수 있고, 그 위험을 방지하거나 회피할 수 있음에도 규정이나 지침을 마련하지 않는 경우, 어느 누구에게도 업무상 과실이 인정될 수 없는 결과가 되어 부당하다).” 11)

이러한 해석론은 타당하다. 업무상 과실은 결국 결과 발생에 대한 예견 및 회피가능성에 대한 규범적 평가이고 이때 기준이 되는 것은 해당 업계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객관적인 주의의무이다. 사업장내의 규정이나 지침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 위험성을 인지하였다고 볼 수는 있으나, 그러한 규정이 없었다고 하여 업계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위험성을 인지하지 못하였다고 결론내릴 수는 없는 것이다. 또한 규정 또는 사내 지침 등은 산업안전보건법령의 위임 또는 업계 표준 등 (해당 사업장 기준의) 외부적 요인에 따라 마련되는 경우도 있어 규정 내지 지침이 있다는 사실 자체가 업무상 과실의 기준이 되는지에 대한 일률적 기준이 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음으로, 항소심 법원은 3유형의 주의의무 위반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설시한다.

“피고인 김○○은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서, 비록 개별작업에 대해 일일이 지시·감독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피고인 이○○ 등 하위 관리자들을 통해 지브형 크레인 설치로 인해 새로이 발생한 위험에 대한 위험성 평가를 지시하고, 그에 따른 안전대책이 마련되도록 하며, 현장근로자들과 하위 관리자들이 크레인 간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안전하게 작업하고, 충실히 지휘감독하는지 살펴야 할 주의의무는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위 피고인의 주의의무가 추상적인 것에 그친다고 볼 수 없다(1).

위 피고인은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의 소장으로서 삼성중공업이 직접 행하는 사업뿐만 아니라 하청업체에 도급하여 행하는 사업에 관하여 삼성중공업 및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안전보건에 관한 책임이 있고, 위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보건업무를 총괄하여 담당하고 있으므로(2), 위 피고인으로서 위 사업장의 안전관리 시스템에 구조적인 문제는 없는지 여부를 결재라인 등을 통해 수시로 확인하고(3), 무엇보다 지브형 크레인 도입으로 인해 새로이 창출된 위험 요인을 파악하고 안전사고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점검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였어야 한다.”(밀줄 및 괄

11) 창원지방법원 2019노941 판결서 20-30면.

호상의 표기는 인용자가 추가)¹²⁾

위 인용 부분 (1)에서 보는 것과 같이 항소심 법원이 상급 관리자/직접행위자를 구분하고 일반적·추상적/구체적 주의의무를 구분하는 종래의 업무상과실치사상의 주의의무 위반의 해석론을 명시적으로 변경하고 있지는 않는다. 조선소장에게 부여된 주의의무가 일반적·추상적인 것에 그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고, 실제로 본 사안의 경우에는 실제로 조선소장 및 상급관리자들이 공법 변경과 관련된 회의에 참여하는 등 직접적인 행위기여가 있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상급 관리자의 관리감독차원에서 요구되는 주의의무의 내용과 다르다고 볼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다만, 위 인용부분 (2),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관리조직상의 최상급에 위치한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지위상의 일반적인 지휘감독업무를 주의의무의 내용으로 제시한다는 점에서 안전보건관리조직상 상급관리자의 주의의무 인정범위를 사실상 확장시킬 수 있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¹³⁾

4. 삼성중공업 판결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위 항소심 형사 판결이 1심 판결에 비하여 진전을 보이는 것은 사실이다. 위와 같은 해석론을 통하여 조선소장·대표이사과 같은 상급 관리감독자의 업무상과실치사상의 인정범위를 보다 넓히고 있다고 볼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법원의 현행법체계하에서의 법 적용보다 진전된 법률의 적용과 해석이 불가능한 것으로도 보이지는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문언상의 한계를 넘는 적용은 어렵다는 점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입법은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가진다.

(1) 업무상 주의의무의 명확화와 수범자의 사실상 확장

본 사안에서의 적용법조에서도 알 수 있듯 중대재해에서 주로 적용되는 법조는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상죄와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이다. 현행법의 해석상으로도 경영자가 업무상 주의의무를 가진다고 볼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나,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¹⁴⁾(이하 ‘본 법안’이라 한다)에 따르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12) 위 판결서 32-33면.

13) 한편, 위 사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의 죄책과 관련하여 상위관리자에 대한 1심 판결의 해석론을 비판하면서 상당한 주의·감독의무자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의 상위관리자의 책임과 관련한 해석론·입법론을 전개하는 문헌으로 전형배, “산업안전보건법상 상위관리자의 책임과 양벌규정의 개정, 「노동법학」 제71권, 2019.

주의의무의 인적 범위를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보건관리체계상 최상급관리 책임자 또는 그보다 상위에 위치한 경영진에게까지 사실상 확장시키고, 이들이 담지하는 주의의무의 내용을 법률로 명확히 한다는 점에서 입법의 의미가 있다. 본 사안의 경우, 삼성중공업 당시 사장은 업무상과실치사상과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 모두에 대해 불기소되었고, 조선소장은 기소는 되었으나 1심에서 업무상 주의의무가 인정되지 않았는데, 만약 본 법안이 본 사건 당시 적용되는 법률에 해당하였다면 지금과는 다른 수사 및 기소, 법원의 판단이 나올 수도 있었을 것이다.

(2)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의 강화

본 사고에 대한 책임자의 죄책은 판결이 확정된 이후에 최종적으로 정해지거나¹⁵⁾, 항소심 판결을 기준으로 살펴보더라도 직접행위자들은 대부분 벌금형 또는 2년 내외의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았고, 삼성중공업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의 양벌규정으로 3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을 뿐이다. 형사정책적으로 형벌의 강화와 엄벌주의가 산업재해의 예방과 피해자의 구제를 위하여 기능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부정적인 입장이 제기될 수 있더라도, 적어도 현행 법률과 그 적용이 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제대로 기능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더욱이 본 사건과 같이 직접행위자뿐만 아니라 관리책임자들에게 사고의 직접적 원인이 있는 것으로 여겨지는 경우에도 직접행위자인 신호수 1인만이 구속되고 관리자 등은 구속영장이 기각되었다는 점, 그리고 신호수·운전수 등 직접행위자들이 관리자들과 동일하거나 또는 그보다 중한 형벌을 선고받았다는 점은, 제재의 강도와 양형의 판단이 불합리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될 수 있을 것이다. 위 법안은 중대재해발생에 대한 관리자들에 대한 형벌의 강화를 피하고 있다는 취지상 의의가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3) 법인에 대한 제재의 강화

위에서 언급한 제재의 문제는 특히 법인에 대한 처벌에서 더욱 그 문제점이 드러난다. 현행 형법 체계상 법인에게 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물을 수 없고,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양벌규정은 벌금액상 한계가 있다. 또한 현행법상, 행위자가 의무위반에 대한 고의 없이 과실만 인정되는 경우, 행위자에 대해서는 형법상

14) 노회찬의원 대표발의안, 의안번호 6761, 위 법안에 대한 소개는 오민애 변호사의 발제를 참조.

15) 위 2심 판결에 대하여 쌍방 상고하여 대법원에 계류중이다.

업무상과실치사상죄가 적용되지만 이 조항에 의해서는 (자연인이 아닌) 법인은 처벌되지 못하고, 산업안전보건법위반으로는 행위자의 고의가 없다는 이유로 행위자가 처벌되지 못하면 법인이 양벌규정으로 처벌되지 않는 처벌상의 맹점이 발생한다.¹⁶⁾¹⁷⁾ 또한 현행¹⁸⁾ 산업안전보건법상 양벌규정으로 법인을 처벌한다고 하더라도 상한과 그 해당범죄가 한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법인 처벌 가능성을 확장하고 벌금의 가중과 징벌적 손해배상을 규정하는 위 법안은 취지상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16)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 2 등과 같이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는 과실범 규정의 형식적 구성요건인 “과실로 인하여”라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과실범을 처벌할 근거가 없다는 입장으로 전형배,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의 형사책임-제66조의2에 관한 대법원 판례의 해석론”, 「노동법논총」 제25권, 2012, 84면 참조.

17) 다만, 위 법안의 문언으로 보았을 때, 법상 의무의 부과도 의무위반(고의범)+사망의 결과발생(과실범)의 결과적가중범의 형태를 띠고 있다고 볼 수 있다(법안 제5조 참조). 경영책임자가 지는 위 법상 의무가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를 일부 또는 전부 포함한다고 하더라도,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총괄관리 책임자의 의무를 상회하는 의무를 부담하기 어렵다고 보이는 상황에서, 결과적가중범의 구조로 사망의 결과발생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구성요건으로 삼는 것이 좋은 입법방안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다. 양벌규정의 면책구조와 같이 의무위반과 사망의 결과발생을 각각을 별개의 구성요건으로 하고, 경영책임자의 면책가능성을 가능토록 하는 방식으로 규율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사료된다.

18) 2020. 3. 31.부터 시행되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10억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될 수 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소개와 주요 판례로 본 기업처벌법의 의의¹⁹⁾

오민애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안전보건에 관한 뉴스를 확인할 수 있는 대화창에는 매일 끊이지 않고 노동현장에서의 사고 소식이 공유된다. 죽음을 슬퍼하고 노동자를 다치거나 죽게 한 책임을 묻기 위해 규탄하고, 재발방지책 마련을 요구하는 것이 낯설지 않게 된 것은 그만큼 산업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기 때문일테다. 노동현장뿐만 아니라, 비용절감을 위해 시설이나 건물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안전을 터부시하고, 이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그러한 결정에 책임을 져야 하는 지위에 있을수록 실제 책임을 지는 것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다.

사고가 발생하면, 현장을 직접 관리하고 지휘감독하는 자에게 형사책임을 묻는데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이때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상죄나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보건조치를 취하지 않은 책임을 묻게 된다. 일을 하다가 현장이 안전하지 않아 노동자가 죽게 된다면, 그에 대한 책임은 안전하지 않은 현장을 만든 사람들이 져야 한다는 것은 책임의 원칙에 비추어보면 너무도 당연하다. 이윤을 누리는 주체가 그에 상응하는 책임도 져야 하고, 사후적인 책임을 묻는 것뿐만 아니라 사전에 관련 법령을 지키고 안전한 일터를 만들어야 한다는 동기부여를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현행법상으로는 개인의 주의의무 위반 행위를 엄격하게 확인하고 이에 따른 처벌을 받도록 하고 있고, 법인의 경우에는 해당 개인에 대한 감독을

19) 2020 5. 12. 진행된 ‘한익스프레스 남이천 물류창고 신축현장 산재삼아 원인 진단 긴급토론회’의 발제문을 수정, 보완함.

게을리 하였다는 점이 분명히 밝혀져야 처벌대상이 된다. 안전을 경시하고 비용으로 보는 기업 문화 속에서, 현장책임자에 대한 처벌만으로는 안전을 신경 쓸 수 있는 유인을 제공하기 어렵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무조건 처벌 수위를 높이자는 취지의 법은 아니다.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검찰의 수사 및 기소여부에 대한 판단, 재판과정에서의 법원의 판단에 맡겨져 있는 책임자에 대한 처벌여부를, 법률 자체에서 그 범위를 기업의 경영책임자, 법인으로 정하고, 구체적인 처벌의 내용을 사법기관에 맡기고자 하는 것이 중요한 골자이다. 그리고 규모가 큰 기업일수록 복잡하고 다단계적인 형태로 외주화를 하는 상황에서, 최종적으로 이윤이 귀속되는 기업은 정작 책임을 지지 않는 구조에도 변화를 주고자 하는 것이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²⁰⁾의 주요 내용

구분	현행법령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적용대상	-기본법이라고 할 수 있는 별개의 법률은 존재하지 않고, 산업안전보건법 등 각각의 법에 분산되어 구체적 안전보건조치 위반의무 불이행에 대해 처벌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적용하면서, 구체적인 주의의무 위반, 예견가능성에 대하여 판단함	- 산업재해, 시민재해 모두 적용 - 사업장, 다중이용시설, 궤도 운행, 위험물 업소

20) 재해에 대한 기업 및 정부책임자 처벌에 관한 특별법안(2017. 4. 14. 발의)을 기본골자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운동본부 발족과 함께 법안의 내용을 일부 수정보완할 예정이다. 법안에서 밝히고 있는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가.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등은 사업주나 법인이 소유·운영·관리하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공중교통수단에서 사람이 생명·신체의 안전에 위해를 입지 않도록 위험을 방지할 의무를 짐(안 제3조).

나.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등은 사업장에서 취급하거나 생산·제조·판매·유통 중인 원료나 제조물로 인해 사람이 생명·신체의 안전 또는 보건상의 위해를 입지 않도록 위험을 방지할 의무를 짐(안 제3조).

다. 사업주나 법인이 제3자에게 임대·용역·도급 등을 행한 경우, 그 사업주나 법인(원청사업주)과 제3자는 공동으로 제3조의 안전조치의무 및 보건조치의무를 부담함(안 제4조).

라.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가 이 법에 따른 안전조치의무 및 보건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를 형사처벌하며, 해당 법인에게도 벌금을 부과함(안 제5조 및 제6조).

마. 법령상 사업장이나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감독의무 또는 인·허가 권한을 가진 공무원이 직무를 유기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상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상 3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안 제7조).

처벌의 대상	현장소장 등 의사결정권이 없는 현장관리자, 노동자	기업법인과 경영책임자, 사고원인에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한 실소유주 및 책임자
	하청 노동자, 특수고용노동자가 피해자인 경우/ 도급 및 위탁의 경우 책임을 묻기 어려움	하청 노동자, 특수고용노동자의 사망 등의 경우에도 책임있는 원청업체 및 관계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임대, 용역, 도급 및 위탁관리 시 공동의무를 부과
처벌의 근거	법이 정하고 있는 구체적인 조치의무 위반여부	-기업법인과 최고책임자에게 법령상의 구체적인 안전조치 외에 위험방지의무 의무 부여 -기업의 안전 관련 구조적 원인(정책, 투자, 인력구조, 조직문화 등)을 처벌 근거로 고려
양형과 처벌의 종류	산업안전보건법 - 산재사망 7년 이하 징역, 10억이하 법인 벌금 - 과징금 일부 도입 - 영업정지 요청, 제한적 공포 (제한적 실시)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상 - 5년 이하 징역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억 이하 벌금(하한형 마련) - 2명이상인 경우에는 장기 또는 다액 합산 가중 - 매출액 또는 수입액 기준으로 벌금 가중 가능 규정 마련 - 영업정지, 보호관찰, 공계약의 배제, 자금의 공무금지 병과 가능 - 범죄형 확정 시 허가취소 등 - 처벌사실 공포
손해배상의 책임	없음	-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인 경우 손해액의 10배를 넘지 않는 한도로 손해배상

실제 사례에 비추어본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의 필요성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의 필요성은 실제 처벌 사례에 비추어보면 보다 분명히 확인된다. 산업재해 관련 수사의 경우, 보통의 사업장은 사업을 총괄관리하는 대표이사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선임되어있으므로 대표이사를 입건하여 처벌한다. 그러나 여러 곳에 공사 현장을 두고 있는 대규모 건설회사의 경우 각 현장소장이 당해 사업을 총괄 관리하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선임되어 있어 현장소장을 ‘행위자’로 선정하고 다른 사정이 없는 한 대표이사를 입건하기는 어려운 구조이다.²¹⁾ 대표이사의 경우 대규모 사업장일수록 통상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구체적인 작업 내용에 대해서는 자세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주장하고, 이에 따라 고의를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수사실무 상으로도 안전조치의무 위반을 인식하지 못한 대표이사 등은 처벌

21) 울산지방검찰청, 산업안전수사실무, 87쪽

하지 못하고 하위직만 처벌하게 되는 것은 형평에 반하고,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의무가 부과되어있음에도 내부규정 등으로 하위직에게 의무나 책임을 전가한 대표이사 등은 처벌하지 못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므로 미필적 고의를 폭넓게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 있다. 이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 안전보건의를 부과하고 위반시 처벌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자 하는 법의 취지에도 부합한다고 할 수 있다.²²⁾

그러나 실제로는 수사 및 기소 단계부터 대표이사를 포함한 경영책임자에 대한 처벌 여부가 문제되는 경우는 많지 않다. 산업안전보건법의 취지와 이에 따른 법 적용의 필요성이 수사실무에서도 확인되고 있지만, 실제로는 검찰의 수사의지와 그 결과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검찰의 불기소처분 후에는 항고-재정신청의 단계를 거쳐야 하는데, 불기소처분이 번복될 가능성이 낮고, 강행적인 처리기한도 따로 없어 비용부담이 피해자에게 전가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또한 검찰의 수사 및 기소가 이루어지더라도, 법원에서의 산업재해 관련 업무상과실치사상에 관한 판단은 일반적인 업무상과실치사상의 경우와 동일하게 다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다단계의 구조속에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고 이에 따른 책임을 묻는다는 특수성이 반영되기 어려운 구조이다. 한익스프레스 이천 사고 이후, 고용노동부 장관은 산재 사망사고를 낸 사업주 처벌을 강화해야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관련 의견을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전달²³⁾한 것 또한, 이러한 재판 실무의 문제점을 지적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위와 같은 과정을 거쳐서 재판을 받게 되더라도, 대부분 약식명령에 그치고 현장 책임자의 경우에도 집행유예를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한국비교형사법학회에서 발표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건 판결 분석 연구’ 보고서에 의하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의 경우 대부분 불구속 상태에서 약식명령이 청구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²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모두 알 수는 없으나, 검찰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를 확인하고 기소에 이른 경우에 관한 통계임을 감안할 때,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을 이유로 한 수사 과정에서 이미 그 처벌의 수위가 낮게 고려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2) 위 산업안전수사실무 97-8쪽

23) 2020. 5. 8.자 MBC 뉴스 “산재 사망사고 낸 사업주 처벌 강화...‘대법원에 의견 전달’”
https://imnews.imbc.com/news/2020/society/article/5764900_32633.html

24) 한국비교형사법학회,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건 판결 분석연구, 138-139쪽

과실치사상범죄 양형기준

Home > 양형기준 > 시행 중 양형기준 > 과실치사상범죄 양형기준

2016.7.1. 시행

형종 및 형량의 기준 집행유예 기준

형종 및 형량의 기준	유형의 정의	양형인자의 정의	양형인자의 평가원칙	공통 원칙	다수범죄 처리기준
-------------	--------	----------	------------	-------	-----------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과실치사	~ 8월	6월 ~ 1년	8월 ~ 2년
2	업무상과실·중과실치상	~ 6월	4월 ~ 10월	8월 ~ 2년
3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	4월 ~ 10월	8월 ~ 2년	1년 ~ 3년
4	산업안전보건법위반	4월 ~ 10월	6월 ~ 1년6월	10월 ~ 3년6월

*대법원 양형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표 6]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범 처분결과(2007년~2017년)

년도	계	기소				불기소					기소 중지	참고 인 증지
		기소 (소계)	구공판		구약서	불기소 (소계)	기소 유예	형의 없음	죄가 안됨	공소권 없음		
			구속	불구속								
2007	4,490	3,487 (77.66)	3 (0.07)	93 (2.07)	3,391 (76.62)	1,000 (22.27)	396 (8.82)	570 (12.69)	-	34 (0.76)	3 (0.07)	-
2008	4,251	3,248 (76.41)	2 (0.05)	172 (4.05)	3,074 (72.31)	995 (23.41)	359 (8.45)	578 (13.60)	-	58 (1.36)	8 (0.19)	-
2009	4,307	2,951 (68.52)	2 (0.05)	192 (4.46)	2,757 (64.01)	1,330 (30.88)	530 (12.31)	753 (17.48)	1 (0.02)	46 (1.07)	23 (0.53)	3 (0.07)
2010	2,563	1,686 (65.78)	-	67 (2.61)	1,619 (63.17)	865 (33.75)	445 (17.36)	396 (15.45)	1 (0.04)	23 (0.90)	6 (0.23)	6 (0.23)
2011	4,424	3,112 (70.34)	3 (0.07)	108 (2.40)	3,003 (67.88)	1,298 (29.34)	593 (13.40)	664 (15.01)	-	41 (0.93)	14 (0.32)	-
2012	11,158	9,089 (81.46)	2 (0.02)	215 (1.93)	8,872 (79.51)	2,048 (18.35)	1,294 (11.60)	693 (6.21)	-	61 (0.55)	20 (0.18)	1 (0.01)
2013	10,753	8,903 (82.80)	1 (0.01)	303 (2.82)	8,599 (79.97)	1,792 (16.67)	1,142 (10.62)	573 (5.33)	-	77 (0.72)	52 (0.48)	6 (0.06)
2014	9,048	7,508 (82.98)	3 (0.03)	405 (4.48)	7,100 (78.47)	1,406 (15.54)	695 (7.68)	640 (7.07)	-	71 (0.78)	126 (1.39)	8 (0.09)
2015	8,283	6,940 (83.79)	5 (0.06)	459 (5.54)	6,476 (78.18)	1,238 (14.95)	551 (6.65)	623 (7.52)	-	64 (0.77)	95 (1.15)	10 (0.12)
2016	11,789	10,514 (89.18)	4 (0.03)	493 (4.18)	10,017 (84.97)	1,108 (9.40)	544 (4.61)	492 (4.17)	-	72 (0.61)	164 (1.39)	3 (0.03)
2017	13,187	11,547 (87.56)	1 (0.01)	612 (4.64)	10,934 (82.91)	1,549 (11.75)	892 (6.76)	611 (4.63)	-	46 (0.35)	89 (0.67)	2 (0.02)

출처: 범죄분석(대검찰청)

* () 안은 %

[표 7]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법인 처분결과(2007년~2017년)

년도	계	기소			불기소					기소 중지	참고 인 중지	
		기소 (소계)	구공판 구속	불구속 구약식	불기소 (소계)	기소 유예	혐의 없음	과거 안됨	권소권 없음			
2007	1,998	1,564 (78.28)	-	20 (1.00)	1,544 (77.38)	433 (21.67)	187 (9.36)	246 (12.31)	-	-	1 (0.05)	-
2008	1,798	1,387 (77.14)	-	54 (3.00)	1,333 (74.14)	411 (22.86)	164 (9.12)	243 (13.52)	-	4 (0.22)	-	-
2009	1,851	1,265 (68.34)	-	69 (3.73)	1,196 (64.61)	575 (31.06)	246 (13.29)	322 (17.40)	1 (0.15)	6 (0.32)	9 (0.49)	2 (0.11)
2010	1,132	690 (60.95)	-	22 (1.94)	668 (59.01)	440 (38.87)	233 (20.58)	205 (18.11)	1 (0.09)	1 (0.09)	1 (0.09)	1 (0.09)
2011	1,848	1,248 (67.53)	-	31 (1.68)	1,217 (65.85)	598 (32.36)	315 (17.05)	282 (15.26)	-	1 (0.05)	2 (0.11)	-
2012	9	1 (11.11)	-	-	1 (11.11)	8 (88.89)	1 (11.11)	7 (77.78)	-	-	-	-
2013	1	1 (100.0)	-	-	1 (100.0)	-	-	-	-	-	-	-
2014	4,065	3,430 (84.38)	-	175 (4.31)	3,255 (80.7)	595 (14.64)	367 (9.03)	227 (5.58)	-	1 (0.02)	33 (0.81)	7 (0.17)
2015	3,804	3,244 (85.28)	-	191 (5.02)	3,053 (80.26)	523 (13.75)	296 (7.78)	218 (5.73)	-	9 (0.24)	32 (0.84)	5 (0.13)
2016	5,534	5,015 (90.62)	-	209 (3.78)	4,806 (86.84)	468 (8.46)	289 (5.22)	176 (3.18)	-	3 (0.05)	50 (0.90)	1 (0.02)
2017	6,280	5,571 (89.99)	-	265 (4.23)	5,306 (84.78)	664 (10.61)	443 (7.08)	217 (3.47)	-	4 (0.06)	23 (0.37)	2 (0.03)

출처: 명치분석(대검찰청)
* () 안은 %

실제 몇가지 처벌 사례를 살펴보다도, 현장관리책임자에 대해서 가장 중한 처벌이 이루어지고, 법인에게는 경영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을 기울여야할 유인을 제공할 정도로 중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여수 산업단지 폭발사고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4도3542판결)**

-대림산업 여수공장 폭발사고로 6명 사망, 11명 상해

-피고인은 대림산업 주식회사 공장장과 대림산업주식회사.

-1심은 일부무죄, 징역1년6월 집행유예3년, 2심은 징역8월 선고, 대법원 파기환송되어 최종 징역8월 선고. 대림산업은 500만원 벌금 선고.

-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는 1심부터 유죄로 보았으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단순히 감시, 감독업무를 담당하였기 때문에 안전조치의무가 없다고 보았음. 그러나 대법원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 취지로 인정하여 파기환송, 최종 실형이 선고됨.

-행위자는 공장장으로 특정돼서 개인이 형사처벌을 받는 것에 그치고, 대림산업 주식회사는 양벌규정에 따른 벌금을 부담함. 다수의 공사 현장을 운영하는 회사의 대표이사 등의 경영책임자에게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의 죄책을 묻기 어려운 현실적인 한계를 보여주고 있음. 500만원의 벌금이 실제 기업 운영에 어떤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임.

***한화케미칼 울산공장 폭발사고**

-2015. 7.경 한화케미칼 울산2공장 폐수집수조 상부에서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용접작업을 하던 중 폐수집수조 내 인화성 가스 폭발로 6명 사망, 1명 상해

-이에 대해 울산지검은 공장장과 생산팀 과장 및 직원, 현장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여 구속. 한화케미칼의 공장장과 생산담당이사, 생산팀장, 생산팀 과장 및 직원, 공무팀장, 공무팀 대리, 한화케미칼 주식회사(법인), 그리고 하청업체 대표와 현장소장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함.

-공장장 징역10월 집행유예2년 벌금500만원, 생산팀 과장 및 직원 금고1년(항소심에서 금고1년 집행유예2년), 한화케미칼 주식회사(법인)와 생산담당이사, 공무팀장에게는 벌금1500만원, 하청업체 대표는 징역8월 집행유예2년, 하청업체 현장소장은 징역10월 집행유예2년 등을 선고함.

-1심 판결문: “기업은 근로자를 이윤창출의 도구로만 보아서는 안되고 기업과 운명을 함께하는 동반자로 인식하고, 위험이 수반되는 산업현장에 투입된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근로자를 보호하는데 한 치도 소홀해서는 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각자에게 주어진 의무를 다하지 않고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은 잘못으로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지 못했고, 무엇보다도 결과가 아주 중하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자못크다. 이는 한화케미칼 울산공장의 안전관리시스템상 구조적 문제를 그대로 드러낸 사고로, 피고인들의 과실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을 중하게 벌하지 않을 수 없다”

-“법인인 회사는 벌금형으로만 처벌되는데다가 법이 정한 벌금액의 상한이 높지 않아 실효적인 제재가 될 수 있는지 의문이다.²⁵⁾ 사고발생 시 법인인 회사가 납부할 벌금액을 포함해 사고처리에 드는 총비용이 사고를 예방하는데 드는 총비용보다 월등히 적다면 같은 잘못은 반복될 수밖에 없다. 개인인 다른 피고인들보다 근원적, 구조적 시스템 문제를 노출한 한화케미칼의 잘못이 더 크다고 보고 그에 상응하는 벌금형을 선고하고자 했으나,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액수의 벌금밖에 선고하지 못함을 참언한다.”

-생산과정에 직접 개입하는 자와 책임자(생산팀 직원 및 과장과 생산팀장, 공무팀장 및 직원, 생산담당이사)에 대해 기소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유의미할 수 있으나, 1심 판결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한화케미칼 주식회사와 같은 기업에게 1500만원의 벌금이 주는 예방효과, 처벌을 통한 재발방지 효과가 얼마나 발생할 수 있을지 의문임. 또한 기업 내에 안전을 중시하지 않아도 무방한 문화, 구조적인 문제점 등에 대해서는 영향을 미치기 어려운 결과라고 할 수 있음.

***삼성전자 불산누출사건²⁶⁾**

-2013. 1. 삼성전자 반도체공장 화성사업장에서 불산가스 누출로 협력업체 직원 1명 사망, 4명 상해(전신화상)

-검찰은 삼성전자 인프라기술센터장 등 7명 불구속 기소, 환경안전책임부문 부사장 등 4명 약식기소, 삼성전자 메모리사업부 사장과 환경안전팀장 등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

-법원은 삼성전자(법인)와 삼성전자 인프라기술센터장에게 무죄 선고, 삼성전자 유독물관리자 등 임직원 3명 벌금 300만원~700만원, 하도급업체 STI서비스(법인, 협력업체) 벌금 1,000만 원, 임직원 3명 벌금 400만 원~700만 원. 항소는 모두 기각되고 상고심도 그대로 확정됨.

-해당 사업장의 운영, 안전한 환경조성에 관한 책임은 궁극적으로 삼성전자에 있고, 관련 임원에게도 이에 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삼성

25) 개정 전 법률에 의하면 벌금액의 최고 상한이 1억원, 도급사업의 사업주에 대한 벌금액의 최고 상한은 1천만원이었음.

26) <http://www.peoplepower21.org/CaseDB/1237602#content> 참조

전자와 관련 임원에게는 무죄가 선고되고 협력업체 관계자가 더 엄하게 처벌을 받게 되는 결과.

***당진 현대제철 가스누출사건**

-2013. 5.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에서 전로 내부 벽돌을 쌓는 축조 작업 중이던 협력업체 근로자 5명이 전로 내부 아르곤 가스 누출로 질식사함.

-당시 가스관을 전로 내부와 연결하는 작업을 하면서도, 전로 내부에서 작업하고 있는 부서와 소통하지 않았음. 전로가 ‘밀폐공간’임에도 불구하고 산업안전보건법상 밀폐공간 프로그램을 실시하지 않음.

-검찰은 2013. 9. 현대제철 직원 3명을 구속기소하고, 현대제철 주식회사와 직원 8명, 협력업체 직원 3명을 불구속 기소함. (같은 해 11월 당진 현대제철 내 현대그린파워 발전소에서 1명 사망, 5명 상해)

-이후 진행된 고용노동청의 특별근로감독결과 하청업체를 포함하여 총 1,123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이 확인됨.

구분	합계	사법처리	작업중지	사용중지	과태료부과		시정명령	권고(현지지도)
					건수	금액(만원)		
계	1,123	574	6	42	476	67,025	896	20
현대제철(주)	898	536	3	40	314	52,419	787	13
협력업체	156	21	0	1	116	9,837	73	4
건설업체	69	17	3	1	46	4,769	36	3

-가스누출사고에 대해서는 현대제철 주식회사가 벌금5천만원, 생산본부장(부사장)이 징역2년 집행유예3년을 선고받고 확정됨(확인된 내용에 한함).

-반복적으로 산재가 발생하고, 다치거나 죽는 노동자가 끊임없이 발생해도 법인이 벌금을 내고, 담당 임직원이 처벌을 감수하는 것 이상으로 제재하지는 못하고 있음을 보여줌.

이와 같이 소수의 사례만 살펴보더라도, 그리고 실제 검찰의 처분 및 법원의 재판 현황을 살펴보더라도 현장관리 책임자에게 책임을 묻는데 그치거나, 법인(사업주)에게 벌금형의 책임을 묻더라도 실제 법인에게 타격을 줄 수 있을 정도의 처벌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산재 관련 처분 대상의 범위가 넓거나, 보다 중하게 책임을 묻게 되는 경우에 검찰이나 법원에서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사건의 의의를 설명하는 것은 그만큼 실제 엄중하게 처벌되는 경우가 드물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인과관계를 엄격하게 따지지 않고 기업과 경영책임자의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정하고,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상의 경우와 다른 산업재해 발생의 구조적 원인을 법 적용 과정에서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데 가장 큰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동안 시민사회에서는 수많은 논의를 거쳐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내용을 구성하고, 법의 제정을 요구하여왔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하고, 이를 통해 사업주, 경영책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것이 산업재해 예방, 일하는 사람을 비롯해 관계된 모든 사람들의 안전과 건강을 중시하는 문화를 만드는 유일한 방법은 아닐 것이다. 그러나 보다 안전을 중시하는 문화를 만들고 산재를 포함한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강한 유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에게 안전조치의무, 보건조치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를 형사처벌하고 해당 법인에게도 벌금을 부과하는 것, 그리고 이러한 처벌과 제재의 내용이 실제 법인 운영에 영향을 줄 수 있을만큼 실효성 있게 정해질 필요가 있다. 현재 검찰의 처분과 법원의 해석에 상당 부분 맡겨져 있는 한계를 조금이라도 바꿀 수 있지 않을까 한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 운동본부(준)

산업재해피해가족네트워크 '다시는'

구의역참사 4주기 추모위원회